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관세지식서비스가 기업의 관세위험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FTA 원산지관리위험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전공

이 호 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유연우

관세지식서비스가 기업의 관세위험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FTA 원산지관리위험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Customs Knowledge
Service to the Customs Business Risk in Corporation :
Focused on the Risk of Origin Management in FTA

2015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전공

이 호 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유연우

관세지식서비스가 기업의 관세위험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FTA 원산지관리위험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Customs Knowledge
Service to the Customs Business Risk in Corporation :
Focused on the Risk of Origin Management in FTA

위 논문을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전공

이 호 철

이호철의 컨설팅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관세지식서비스가 기업의 관세업무리스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FTA 원산지관리위험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 전공

이 호 철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역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11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49개국과 협정이 발효되어 지난 10여년동안 무역기업의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최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이 진행되고 있어 세계무역환경은 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FTA협정에서는 협정국간 협정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협정국간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여 교역을 증대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양국간의 교역증대 및 무역이익 증가 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양국간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데 그 기준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FTA무역환경에서 협정국간 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를 협정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데 현재 많은 무역기업들의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위험관리가 부족하여 관세당국의 사후 검증과정에서 업무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규위반에 대한 관세추징, 과징금, 과태료 및 가산금 등의 부과는 무역기업들에게 뜻하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FTA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물론 향후 우리나라 대외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역기업 자체에도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무역기업들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FTA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조직 구성, 인원확충, 시스템구축 등 관세업무관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는데 주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업무관련 지식서비스의 수용도 필요한 부문에만 국한시켜 활용하는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무역기업들이 관세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 중에서 전문지식의 부족, 인력부족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FTA원산지관리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세지식서비스를 통해 관련 오류들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무역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업무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채택된 변수들의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을 통계 처리하여 변수별 유의수준을 측정하였고, 실제로 원산지결정 및 원산지표시업무를 위험정도를 평가하였다. 무역기업들이 관련 위험요소를 완화 내지는 제거시키는 데 관세지식서비스의 역할의 정도 및 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동안의 원산지업무에서 발생된 법규 위반사례들과 대비하여 향후의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FTA,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C/O),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관리, 원산지검증, 원산지조사, 품목분류(HS Code), PSR, 원산지기준, BOM, RVC, MC, CTH, CTHS, 위험, 세번변경.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3절 연구의 차별성	5
제 2 장 관세업무의 정의 및 위험관리	7
제1절 관세업무 정의	7
제2절 관세업무 위험관리	7
제 3 장 관세지식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9
제1절 관세지식서비스의 정의와 역할	9
제2절 관세지식서비스의 형태별 특징	9
제3절 관세지식서비스의 효과	10
제 4 장 FTA원산지관리 및 위험분석, 협력업체,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12
제1절 FTA 원산지 관리 결정기준	12
1) 일반 기준	12
2) 보충적 기준	18
3) 직접운송원칙	21
4) FTA 원산지인정의 특례	22

제2절 FTA 원산지결정과 품목분류	23
제3절 FTA 원산지 내부관리 Process	25
1) 수출기업의 원산지 내부관리 Process	26
2) 수입기업의 원산지 내부관리 Process	28
3) FTA 원산지 위험분석 내부관리 Process	29
4) FTA 원산지검증제도 내부관리 Process	32
제4절 FTA 협력업체 관리	40
제5절 FTA 원산지관리 만족도	42
 제 5 장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44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44
제2절 가설의 설정	46
제3절 자료수집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50
1) 모집단과 표본 설정	50
2) 변수의 정의와 설문문의 구성	50
제4절 설문조사 통계처리	57
 제 6 장 연구결과	58
제1절 통계 일반사항	58
제2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58
제3절 관세지식서비스의 경로별 활용도와 만족도	60
제4절 내부원산지관리 Process상 핵심관리요인과 만족도	61
제5절 내부원산지관리조직	63
제6절 무역기업의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64
제7절 무역기업의 원산지검증 준비정도	64
제8절 독립변수의 유의성분석	67
제9절 매개검증 효과분석	69

1) 관세지식서비스와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매개효과	69
2) 관세지식서비스와 품목분류 오류위험 매개효과	71
3) 관세지식서비스와 원산지기준 오류위험 매개효과	72
4) 원산지관리Process와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매개효과	73
5) 원산지관리Process와 품목분류 오류위험 매개효과	74
6) 원산지관리Process와 원산지기준 오류위험 매개효과	75
7) 원산지관리Process와 원산지검증 준비정도 매개효과	76
제10절 가설검증 결과	77
1) 관세지식서비스 가설검증	77
2) 원산지관리Process 가설검증	78
3) 협력업체관리 가설검증	79
 제 7 장 결론	 81
참고문헌	85
부 록	88
ABSTRACT	101

표 목 차

<표 4-1>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13
<표 4-2>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산정공식 비교	17
<표 4-3> FTA 협정별 누적기준 유형 및 근거	20
<표 4-4> FTA 협정별 역외가공 적용 비교	23
<표 4-5> 품목분류 오류에 의한 관세업무 위험	24
<표 4-6> FTA 원산지관리의 핵심내용	26
<표 4-7> 원산지결정 단계별 Process	27
<표 4-8> 수출 원산지 검증사례1	36
<표 4-9> 수출 원산지 검증사례2	37
<표 4-10> 수출 원산지 검증사례3	37
<표 4-11> 수출 원산지 검증사례1	38
<표 4-12> 수입 원산지 검증사례2	39
<표 4-13> 수입 원산지 검증사례3	39
<표 5-1> 변수별 수행요인 List	45
<표 5-2> 설문지의 구성	56
<표 6-1> 일반적 특성	59
<표 6-2> 신뢰도 분석	60
<표 6-3> 관세지식서비스의 경로별 활용과 만족도	61
<표 6-4>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내부관리process 상의 핵심요인 ...	62
<표 6-5>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업내 관리 만족도	63
<표 6-6> 원산지관리 조직에 관한 질문	63
<표 6-7> 원산지검증관련 위험정도에 관한 질문	65
<표 6-8> 원산지검증 대응 준비정도 질문	66
<표 6-9> 관세지식서비스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67
<표 6-10> 내부관리 PROCESS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68
<표 6-11> 협력업체 관리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69
<표 6-12> 관세지식서비스가 원산지위험 노출정도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	70
<표 6-13> 관세지식서비스가 품목분류 오류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71

<표 6-14> 관세지식서비스가 원산지기준 오류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72
<표 6-15> 내부원산지관리 PROCESS가 원산지위험 노출정도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73
<표 6-16> 내부원산지관리 PROCESS가 품목분류 오류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74
<표 6-17> 내부원산지관리 PROCESS가 원산지기준 오류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75
<표 6-18> 내부원산지관리 PROCESS가 원산지검증 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76
<표 6-19> 관세지식서비스 가설의 검증결과	77
<표 6-20> 내부 원산지관리 PROCESS 가설의 검증	78
<표 6-21> 협력업체관리 가설의 검증	79



그림 목 차

<그림 4-1> 원산지검증 추이	34
<그림 4-2> 원산지검증 절차	35
<그림 4-3>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증명서의 관계도	41
<그림 5-1> 연구모형도	4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¹⁾가 중심이 되었다. 무차별주의와 다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GATT는 국제기구로서의 정체성 미비와 법적 구속력의 한계로 인한 경제 강대국의 경제블럭화, 쌍무주의 등으로 무력화 되는 상황에서 1986년 GATT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다자간 무역기구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1995년 1월 새로운 무역기구인 WTO²⁾체제(World Trade Organization)로 전환되었다.

WTO는 자유무역에 의한 차별 없는 무역(trade without discrimination)을 실천하여 세계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GATT의 만장일치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다수결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 10년이 채 안되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의 지역주의가 등장하고 WTO에 의해 논의되었던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³⁾협상마저 지지부진하게 되자 세계 각국은 WTO에 의한 다자주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역외국가로서의 상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와 같은 상호개방을 통한 실질적 시장 확대의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양자간 무역을 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의 취약분야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는 등 오늘날 국제무역환경은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급속히 기울어가는 상황이다. FTA는 2개국 이상 복수 국

1)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다. 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다.

2)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Doha Development Agenda의 약자. 2002년 초부터 WTO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농산물,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등이 주요 의제이다.

기간 또는 지역간 상품·서비스 교역과 투자 등의 자유화로 관세와 기타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하여 체약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경제통합의 초보단계이다. FTA는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⁴⁾이다. 비교적 유연한 형태의 CEPA⁵⁾(한·인도), EPA⁶⁾(일·멕시코), SECA⁷⁾(한·멕시코 예정)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정도 큰 틀에서 FTA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세계무역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04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협상결과 2015년 5월 현재 11개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49개국과 FTA협정을 발효시킴으로서 세계무역질서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이 진행되고 있어 세계무역환경은 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무역기업들은 FTA 확대라는 무역환경변화로 인해 새로운 무역기회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제도적인 요인과 업무흐름의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해 있다.⁸⁾ 이에 따라 무역기업들은 무역관련 리스크, 환율변동 리스크 및 관세업무 리스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정성훈(2007)은 대부분의 무역기업들이 수출입신고 업무는 기본적인 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세가격 평가업무, 심사업무 및 쟁송해결 업무 등은 관세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 인식하고 관련 업무리스크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세지식서비스의 수요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무역기업들이 종전에는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제도와 관련된 업무에

4)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발라사의 경제통합 5단계설 중 가장 느슨한 형태로 CEPA(한·인도), EPA(일·멕시코), SECA(한·멕시코 예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고 있으나 큰 틀에서 FTA로 이해된다.

5)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6) 경제연대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관세철폐, 투자, 인적교류, 지식재산권 보호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낮은 수준의 협정이다.

7)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rity Agreement)의 약자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분야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낮은 수준의 양자협정이다.

8) Jagdish Bhagwati 교수는 각 나라마다 다른 규정이나 절차를 확인함에 있어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게 됨으로써 거래비용절감, 관세특혜 등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는 의미로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s)"라고 설명하였다.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업무의 난이도와 위험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WTO 원산지협약의 준수가 강조되고 있고,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관세지식서비스의 효과를 서비스 주체별로 정리하고, 현재 FTA가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환경에서 무역기업들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FTA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위험에 대한 현황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만족도를 분석하고, 부족한 상태이거나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기업들이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관세지식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과 관세지식서비스 주체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그 효과가 무역기업들의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위험을 완화 내지는 제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우리나라의 무역기업들은 FTA무역환경에서 양적인 측면의 무역확대에는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대외무역 환경변화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 등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기업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준비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조직구성, 인원확충, 시스템 구축 등 관세업무관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는데 주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업무관련 지식서비스의 수용도 필요한 부문에만 국한시켜 활용하는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형대, 2015, pp98-99)

우선 이형대(2015), 박완수(2015), 김윤식(2014), 이내형·오경환(2009) 등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관세업무에 제공되고 있는 관세지식서비스가 무역기업의 안전관리와 위험관리에 기여한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관세지식서비스가 무역기업의 관세업무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기업들도 지속적인 관세지식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이명구, 2015)

오늘날 지식기반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 전문화, 분업화 및 다양화 등의 경영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업성과의 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의 중요한 경쟁우위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여러 가지 업무위험의 완화 내지 제거는 글로벌 무역환경 하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조훈구,2011, pp8)

이와 관련하여 무역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관세업무위험을 평가하고, 해당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제공받고 있는 관세지식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여러 가지 연구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무역 업무에서 관세지식서비스의 필요성 내지는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그러한 문헌적 검증결과 중에서 FTA 무역환경에서 무역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하고, 실제로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선행조건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FTA원산지위험관리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현재 무역기업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FTA 무역환경 하에서의 원산지업무와 관련된 제반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원산지결정 및 관리업무, 원산지 위험관리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무역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FTA 협정국별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업무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채택된 변수들의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응답내용을 통계 처리하여 변수별 유의수준을 측정하였고, 실제로 원산지관리업무의 위험정도를 평가하였다.

무역기업들이 관련 위험요소를 완화 내지는 제거시키는 데 관세지식서비스의 역할 정도 및 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동안의 원산지업무에서 발생된 법규 위반사례들과 대비하여 향후의 장단기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무역기업들이 FTA무역환경 하에서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부문과 그러기 위해 수행해야 할 원산지위험관리업무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하여는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무역기업들에게 전문적인 관세지식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기업들이 무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업무위험이 완화되었다는 연구결과(김윤식, 2014)들을 바탕으로 FTA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에서도 관세지식서비스의 제공이 원산지관련 업무 위험을 완화 내지는 제거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또한 기업이 원산지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원산지관련 관세지식서비스와 기업의 FTA원산지 내부관리Process 및 협력업체 관리 를 독립변수로, 독립변수인 관세지식을 습득하고 기업내 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통계처리 하여 모형에 설정되어 있는 각 변수별 신뢰도 및 유의수준을 분석하고, 변수간의 인과관계와 요인별 영향력을 실증 분석하여, 원산지업무위험의 완화 내지는 제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차별성

자료⁹⁾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가 수출한 상품에 대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경우(수출검증)가 242건이며, 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입한 상품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행정당국이 상대국에 검증요청을 의뢰한 경우(수입검증)가 535건에 이른다. 더구나 수입검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의 조사만으로도 원산지오류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상대국의 검증과정 없이 수입자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FTA검증을 담당하는 관세행정당국의 의견이므로 실제 수

9) 「FTA 원산지검증 현황 및 대응전략」 세미나 자료(대한상공회의소, 2014년 11월)

입검증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원산지업무오류로 인하여 무역기업에 부과되는 관세추징, 과징금, 과태료 및 가산금 등은 무역기업들에게 뜻하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FTA의 효과를 반감시킴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 대외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역기업 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본 연구는 현재 무역기업들이 관세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 중에서 특히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인력부족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FTA원산지관리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전문 관세지식의 서비스를 통하여 FTA원산지위험을 제거 또는 완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무역기업들의 경영불안정성을 제거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0) 2009년 FTA원산지오류로 추징된 관세액은 156억2천만 원이다. (출처:2010.8.19. 관세청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주관 수출기업 원산지검증대응능력 향상 국제세미나 자료)

제 2 장 관세업무 정의 및 위험관리

제 1 절 관세업무 정의

관세업무는 관세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집행 또는 수행하는 과정상의 제반업무를 말하며 여기서 ‘관세법등’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통합공고¹¹⁾상의 52개 특별법, 수출입공고, 전략물자관련 공고, 기타 규정 및 고시에서 정한 업무수행절차를 말한다.(김태인.김석태, 2009)

무역기업들은 통상적인 무역거래과정에서 관세법, FTA특례법,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관세추징, 과태료 등의 재무적 손실과 형벌,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의 비재무적 손실을 입게 된다.

제 2 절 관세업무 위험관리

무역기업들이 관세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James(1990)는 기업의 리스크 인식은 리스크 관리의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연구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표준이 정하는 위험의 관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확하게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을 측정 또는 평가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환원시켜 위험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것이다.¹²⁾

관세업무의 위험관리역시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관세위험의 발생 원인을 판별하고, 발생된 위험의 형태, 발생 규모와 빈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표

11)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통합하여 공고한 것

12) Risk Management Standard (AS/NZS 4360: 2004)참조

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stants & Corbett(1990)은 연구결과에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무역기업들이 과거의 기획심사, 실지조사 등에서 지적사항 및 처분결과를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반복적인 오류 발생을 억제시킴은 물론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통세관의 심사과정 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했던 오류 즉 HS 품목분류, 원산지결정 및 수출입요건 확인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분석함으로써 관세업무 위험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성훈, 김태인(2007)의 연구 자료에서 보면 대부분의 무역기업들이 자체적인 평가보다는 외부의 정보교환 및 전문가의 컨설팅 등에 의한 평가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무역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 과거의 손실 기록 및 세관의 조사실적 등이 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기업들이 관세업무 위험을 식별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FTA원산지업무를 중심으로 위험의 측정, 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을 참고하여 관세지식서비스가 FTA원산지업무를 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키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장 관세지식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제 1 절 관세지식서비스의 정의와 역할

관세지식서비스는 무역기업들이 수출입거래를 영위함에 있어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를 관세당국, 관세업무관련 전문기관(관세법인, 관세사 등), 인터넷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 및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관세업무 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관세지식서비스의 제공이 기업의 관세업무 위험을 완화시켜 준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결과들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관세업무 위험의 관리는 궁극적으로 무역기업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관세업무 위험의 관리목적은 무역기업의 수출입거래 과정에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최선의 위험관리전략을 선택하여 실행하는데 있다. 그로 인해 관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법률적 위험요소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기업이 관세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자체적으로 완화 내지 제거하지 못하고 외부의 관세지식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측면의 관세지식서비스의 경로별 효과가 상호 연관될 때 최선의 관세업무 위험 관리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정창근,김태인, 2010).¹³⁾

제 2 절 관세지식서비스의 형태별 특징

수출입무역기업이 관세업무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관세지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무역관련 단체 등의 공법

13) 정창근, 김태인(2010)의 연구에서 “운영리스크관리- 관리성과 - 기업경영성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 관세업무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이 제공하는 정보, 관세전문가인 관세법인(관세사)이 제공하는 정보, 인터넷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법률 또는 전문서적을 통한 방법, 지인을 통한 정보획득 등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입무역기업이 정보를 획득하는 여러 통로 중에서도 관세법인(관세사)은 전문적인 관세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공된 정보를 활용한 실무운용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하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지식 서비스는 어느 경로의 지식서비스보다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세법인(관세사)이 무역기업에 제공할 관세지식서비스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하겠다.

제 3 절 관세지식서비스의 효과

대부분의 무역기업들이 관세업무 위험의 완화 내지는 제거를 위해 제공받고 있는 관세지식서비스에 대한 효과에 대해 나도성, 육헌영(2012)의 연구결과를 보면 통관관련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무역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고 실제로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역기업들이 이용하는 관세서비스는 일상적인 수출입 신고업무에 편중되어 있고 일상적인 수출입 신고업무란 무역기업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의 결과를 전산적으로 정해진 포맷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불과하며, 관세당국은 기업의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후로 미루고 우선 신고내용의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하여 수리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 신고사항에 숨어있는 기업의 내부의사결정과정의 오류인 실제적인 관세위험은 일상적인 신고업무에서는 발견 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업무행태이다.

무역기업의 관세위험이 발견되는 과정은 관세당국의 관세심사, 관세조사의 과정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한편으로는 무역기업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진단을 통하여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바 관세행정의 궁극적 목적상 후자가 매우 바람직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발생된 위험을 치유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무적 부담과 비재무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세지식서비스가 제공되는 바람직한 형태는 무역기업 스스로 내부진단을 통하여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들어 무역기업들이 중요한 현안으로 여기고 있는 FTA원산지업무의 경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위험요소를 평가, 관리할 수 있는 관세지식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역기업이 안정적으로 FTA원산지업무를 활용할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제 4 장 FTA원산지관리 및 위험분석, 협력업체,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제 1 절 FTA원산지결정기준의 관리

원산지결정기준은 교역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FTA협정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구분한다.

협정국간의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설정 및 적용 등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선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미 체결된 제3국은 관세특혜에서 배제시키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FTA 체결국들의 제3국에 대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기 때문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표 4-1>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Criterion)은 모든 생산과정이 수출국에서 수행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인데 일부 국가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시키는 경우도 있다.

둘째,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은 두 나라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이 있고 이외에 누적기준,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불인정기준 및 직접운송의 원칙 등 다양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들 원산지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어느 한 국가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경우 등에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농수산물, 광업제품 등 1차 산업

제품이 주로 해당된다. 물품의 생산 및 취득 등의 영역의 범위에 관하여 싱가포르, 칠레, 페루, 미국 및 콜롬비아 협정은 적용영역을 "one or both of the parties"(일방 또는 양 당사국,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협정에서는 "in the territory of a party" (당사국 또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도 협정은 단순히 수출당사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FTA 원산지관련 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역내국, 계약당사국, 수출당사국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표현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협정에서 "Party"에 양 당사국이 모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인도협정은 관련협정조문 제3.2조 및 제3.3조에 대한 의미상 우리나라 또는 인도 중 어느 한쪽 수출당사국만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표 4-1>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일반 기준	완전생산 기준	- 한 국가 내에서 완제품을 생산 - 다국적기업의 경우 완전생산 간주물품으로 예외 인정		
	실질변형 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특정공정기준	단독기준	세 가지 중 하나만 적용
			선택기준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 주요공정기준
				세번변경 + (주요공정 or 부가가치)
			조합기준	- 세번변경 + 부가가치 - 세번변경 + 주요공정
보충적 기준	- 누적기준(재료누적, 공정누적, 상품누적), - 미소기준 - 대체가능 물품(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 평균법) - 기타(중간재, 간접재료, 불인정공정, 공구 및 부속품 등)			
품목별기준	- HS Code별로 원산지 인정요건을 정한 기준			
역외 가공	- 개성공단, 특정지역 등			

이호철, 윤남현 공저, "FTA 알고가자" SEE'S COM, 2013, P.180.

완전생산기준은 본래 특정 물품이 어느 한 국가의 영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이 일반화되

어 있는 현실에서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완전생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바, ㉠ 협정 당사국(역내국) 선박에 의해 영역 밖의 영해에서 획득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역내 선박 내에서 가공하여 생산한 물품, ㉡ 협정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한 물품, ㉢ 협정 당사국 또는 협정 당사국의 사람에 의하여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 그 외 협정 당사국 역내에서 행해진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부산물, 협정 당사국 역내에서 회수되고 재활용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중고물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 실질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 가공 및 제조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¹⁴⁾.

우리나라의 경우 FTA특례법 제9조 1항 2호 각 목에서 정한 바,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특정공정기준 등이 실질적 변형기준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품목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s Specific Rules)에서 정하고 있고, FTA특례법 시행규칙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1)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세번변경기준은 「통합품목 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른 거래상품의 품목번호가 당해 거래 상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 가공 및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HS Code 2단위(CC;

14) Edwin(1994)은 실질적 변형은 특정물품의 생산, 제조 및 가공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Change of Chapter), 4단위(CTH; Change of Tariff Heading) 및 6단위(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의 변경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통관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목분류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HS Code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HS 코드상의 품목분류는 원료 → 중간제품 → 최종 완제품의 순서로 즉 가공단계별로 배열되어 있으며 동일한 원재료, 성분, 형태, 용도 및 기능 등을 지닌 물품을 하나의 부(Commodity), 류(Chapter), 호(Heading) 및 소호(Sub-Heading)로 배열하고 있다.¹⁵⁾ HS 분류는 통상적으로 동일 분류군에 배열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게 되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진다.

이는 가공 및 제조 등에 의해 물품의 성분, 형태, 용도 및 기능 등이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의 변경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품목분류가 복잡하거나 재료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되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 등을 부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세번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물품의 전체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번변경의 사유로 인한 원산지증명서를 상대방에게 발급하기 위하여는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2)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FTA협정에서의 부가가치기준은 「특정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역내가치는 협정문상 체약국을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동일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가치증가분을 의미하므로 부품, 임금 등과 같은 직접제조비용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감가상각 및 운송비용 등도 모두 부가가

15) 우리나라는 10단위 HSK를 운용하고 있고 EU는 8단위, 일본 9단위 품목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치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세 번 변경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¹⁶⁾ 특정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은 원산지결정 및 적용기준이 정확하고 단순하여 당사국간 상호 이해하기가 쉽고 원산지 입증 및 결정이 회계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정확성도 확보되고 양 당사국간 협상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변동이나 제품 및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에 따라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이 원가공개를 꺼리는 등 정확한 원가파악이 어려워 사후검증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고임금 국가가 저임금 국가 보다, 부품가격이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 보다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개도국 보다는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 데 첫째, 국내 혹은 역내가치함량의 최소비율을 정하는 국내가치함량기준(DC; Domestic Contents) 또는 역내가치함량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이 있으며, 둘째, 역외 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기준 이하로 사용된 경우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는 수입산 함량기준(MC; Import Contents)이 있다.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국가들 중 칠레, 싱가포르, ASEAN, 인도, 페루, 미국 및 콜롬비아 협정은 RVC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EFTA, EU 및 터키 협정은 MC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산정방식은 <표 4-2>에서와 같이 RVC기준과 MC기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RVC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은 통상 집적법(Build-up method), 공제법(Build-down method), 및 순원가법(Net Cost method)이 있다. 집적법(또는 거래가격방식)은 원산지재료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 유리하고, 공제법(또는 순비용방식)은 원산지재료의 비중이 낮은 경우에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집적법 보다 공제법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물품가격에는 통상적으로 직접재료비 이외에 판매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제법에서 부가가치비율이 높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순원가법은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할 때에 제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16) 물품의 단순한 세트구성 등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분을 역내부가가치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순원가는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 중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마케팅 및 사후 판매서비스 포함), 기술사용료, 선적 및 포장비용, 허용범위를 초과한 이자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공제법에 사용되는 RVC 보다 낮아지게 된다.

<표 4-2> FTA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산정공식 비교

유형	협정	산정공식		관련근거
		집적법	공제법	
RVC	칠레	$VOM/AV \times 100$	$(AV-VNM)/AV \times 100$	협정 4.3조
	미국	$VOM/AV \times 100$	$(AV-VNM)/AV \times 100$	미국: 6.2조
	콜롬비아	순원가법 : $(NC-VNM)/NC \times 100$		콜롬: 3.3조
	싱가포르	—	$(CV-VNM)/CV \times 100$	4.5조
	ASEAN	$VOM/FOB \times 100$	$(FOB-VNM)/FOB \times 100$	부속3.4조
	인도	—	$(FOB-VNM)/FOB \times 100$	3.4조
	페루	$VOM/FOB \times 100$	$(FOB-VNM)/FOB \times 100$	3.3조
MC	EFTA	$VNM/Ex-Works \times 100$		5조
	EU, 터키	$VNM/Ex-Works \times 100$		의정서 5조

1)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 : 물품생산에 투입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

2)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3) NC(Net Cost), AV(Adjusted Value) : 조정가격

칠레, 페루 및 ASEAN 협정은 집적법과 공제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싱가포르 및 인도협정은 공제법만을 규정하고 있다.¹⁷⁾ 미국협정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집적법과 공제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부품목(예를 들면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순원가법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롬비아 협정은 미국협정과 동일하나 수입자를 제외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만 권한이 주어진다.

17) 특례법시행규칙 2-다-(2)에 의하면 한-ASEAN 협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ASEAN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공제법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순원가법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적용되는 역내부가가치비율 산정방식으로 현지조달비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이며, 한·미FTA협정에서는 자동차 품목 중 일부품목에 적용하고 있다.¹⁸⁾

(3)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Processing Operating Criterion)

특정공정기준은 특정 제품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기술적 측면에서 해당제품의 중요한 특성을 부여해주는 제조 및 가공공정을 기술한 특별조항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세 번 변경기준이 비원산지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 변경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특정 공정기준은 각 물품의 주요 제조방법을 제시하고, 제시된 해당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려면 해당물품의 일정단위 이상의 변경을 필요로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물품의 역내가치의 변화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특정공정기준은 제시된 공정만을 수행하면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 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대개 제조, 가공공정의 상세설명서에 의하며, ‘특정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해당물품의 원산지’라고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과 ‘특정 공정만으로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정 공정에 대한 상세설명서를 작성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특정물품에 대하여 세 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보조하는 기준으로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 방식은 의류와 직물류 같은 섬유제품, 석유 및 화학제품 등에 적용된다.

2) 보충적 기준(Supplementary Criterion)

보충적 기준은 원산지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역내

18) 특별법시행규칙 별표 11, 2-다-(4)에 의하면 ㉠ HS 8407.31 ~ 34(엔진), ㉡ HS 8408.20(디젤엔진), ㉢ HS 8409(엔진부품), ㉣ HS 8701 ~ 8705(자동차), ㉤ HS 8706 (샤시), ㉥ HS 8707 (차체) ㉦ HS 8708 (자동차 부품) 등은 순원가법에 의해 부가가치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간 재료이동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의 FTA원산지규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충적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는 미소기준, 불인정공정기준, 누적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최소가공기준, 역외가공인정 및 직접운송원칙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가) 미소기준(De Minimus or Tolerance Rule)

최소허용기준이라고도 하며 해당 물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또는 수량이 일정기준 이하로 미미한 경우에는 세 번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정도의 경미한 가공인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소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특정비율 이하로 규정하나, 섬유류의 경우량을 기준으로 미소기준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섬유제품의 세 번이 섬유나 실의 함량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과 섬유제품의 가격등락이 상대적으로 심하여 가격기준이 곤란한 점 등 때문이다.¹⁹⁾ 이러한 미소기준은 일반용품, 농산물, 섬유제품 등에 제품의 특성에 따라 협정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공정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FTA원산지판정의 효율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FTA협정에서 채택, 적용시키고 있다.

나) 누적기준(Accumulation or Cumulation)

누적기준은 어느 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를 상대국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누적기준을 채택하는 이유는 협정체결 국가

19) 한국-칠레 FTA협정 : 섬유류와 관련하여 사용된 원사의 중량을 기준으로 8% 미만을 미소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칠레FTA 협정 제4.6조) 한국-미국 FTA협정 : 섬유류와 관련하여 사용된 원사의 중량을 기준으로 7% 이하를 미소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FTA 협정 제4.2조 7항)

간 역내 산 재료의 사용 및 역내가공 촉진을 통하여 교역활성화와 시장통합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다.

누적기준에는 물품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측면에서 재료누적, 공정누적 및 상품누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누적을 인정하는 국가의 수 등 지역적 범위측면에서 양국 누적과 다국 누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중에서 재료누적이 인정되면 세 번 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이 용이하고, 공정누적이 인정되면 특정공정기준의 충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4-3>에서와 같이 재료누적은 역내국 원산지재료를 물품 생산국의 재료로 간주하는 것으로 모든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정누적의 경우는 협정마다 인정여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양적누적 및 다국 누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품누적은 세트구성품 등의 경우 상대국 원산지 상품을 자국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칠레, 페루, 미국 및 콜롬비아 협정에서 인정된다.

<표 4-3> FTA 협정별 누적기준 유형 및 근거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터키	페루	미국	콜롬비아
유형	A,B,C	A,B	A	A,B	A	A,B	A,B,C	A,B,C	A,C
	D	D	E	E	D	D, E	D	D	D
근거	4.5조	4.9조	1-3조	3-7조	3.7조	3조	3.6조	6.5조	3.6조

1) A : 재료누적, B : 공정누적, C : 상품누적, D : 양국누적, E : 다국 누적

2) 근거 : 협정별 관련 조항을 표시함

이호철, 윤남현(2013) P.242 참고

다) 대체가능물품기준(Fungible Goods Criterion)

대체가능물품은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상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및 이동평균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을 말한다.²⁰⁾

대체가능물품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혼합, 보관하는 경우 원산지결정은 재고관리법 중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는 생산자가 지정한 하나의 방법만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대체가능물품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 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고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

3) 직접운송의 원칙

직접운송의 원칙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이라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국내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비당사국인 제3국에서 세관의 감독하에 재포장 등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원산지로 인정한다.

직접운송 요건과 비당사국 경유 허용요건을 동시에 규정하는 유라시아형과 경유요건만을 규정하는 아메리카형으로 구분되며, 특례법(제9조 2항 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직접운송 요건과 경유요건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칠레, 미국 및 페루협정이 경유요건만 규정하는 아메리카형을 채택하고 있고 그 외의 협정에서는 직접운송 요건과 경유요건을 모두 규정한 유라시아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EFTA, EU, 터키 및 콜롬비아 협정은 경유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타 협정은 경유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에 명시된 여부를 떠나서 수입국 관세당국이 경유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0) 싱가포르협정, 칠레협정, 페루협정, 미국협정 및 콜롬비아협정은 상품과 재료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적용범위로 하고 있고 기타 다른 협정에서는 재료에 국한하고 있다.

4) FTA 원산지인정의 특례

가)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FTA협정 체결당사국 내에서 반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제3국에서 가공하고 다시 해당국으로 재수입하여 최종제품을 만든 후 상대 체결당사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는 품목제한 없이 모든 물품에 적용하는 일반적 역외가공과 HS 6단위 또는 10단위 물품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제한적 역외가공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협정의 원산지 요건과 직접운송의 원칙은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체결된 협정별로 역외가공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첫째, 한·싱가포르 FTA협정에서는 제한적 역외가공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원산지 투입 총가치가 4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과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완제품 관세가격의 45% 이상일 경우에만 역외가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둘째, 한·EFTA협정에서는 일반적 역외가공과 제한적 역외가공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총 추가가치(Total Added Value)가 최종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당사국에서 온전히 획득되거나 불충분공정 이상의 작업 도는 가공을 거칠 것,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이 최종상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재수입된 재료 또는 상품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특정지역 생산물품

특정지역의 생산물품은 개성공업지구 또는 그 밖의 북한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출물품을 말하며, 이들 특정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역외가공방식에는 일반적으로 IS(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방식과 OP(Outward Processing)방식으로 구분한다. IS방식은 실제 원산지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국에서 수출되는 일반품목에 대해 역내 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이고, OP

방식은 역외가공지역에서 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한·싱가포르 협정에서 최초로 인정된 이후 칠레협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FTA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표 4-4> 협정별 역외가공 적용 비교

협정	적용 기준	적용 내용
한·싱가포르협정 (협정 4.2조)	제한적 역외가공	- 비원산지 투입 총가치가 완제품 관세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원산지 재료가치가 완제품 관세가격의 45% 이상일 것 등
한·EFTA 협정 (부속서 1-4)	일반적 역외가공 + 제한적 역외가공	- 총 추가가치가 최종상품의 공장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불충분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동을 거칠 것 -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이 최종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초과하지 않을 것
한·ASEAN 협정	제한적 역외가공	-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본선인도(FOB)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생산의 총 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가치가 60% 이상일 것
한·인도 협정	제한적 역외가공	-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본선인도(FOB)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최종 상품의 재료의 60% 이상일 것
한·페루 협정	제한적 역외가공	-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본선인도(FOB)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한·EU, 한·터키 협정	별도 인정	- 별도의 원산지의정서에 역외가공의 근거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OZP)에서 지정한 지역에서의 역외가공 인정
한·칠레 협정	역외가공 불인정	
한·미 협정	역외가공 불인정	

1) 한·EU, 한·터키 협정은 OZP에서 지정한 지역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성공단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호철, 윤남현(2013)

제 2 절 FTA 원산지 결정과 품목분류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상품의 품목분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며, 특히 FTA 무역 업무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필수 요건이다. FTA협정상 품목별 기준표 (PSR)는 거래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거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HS(품목분류)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알 수 없게 된다. 환언하면 품목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입 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제시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표 4-5> 품목분류오류에 의한 관세업무 위험

분야	발생 가능 위험
FTA	- 상품수출 시 자기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HS Code 오류시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하게 됨으로서 수입국에서 통관이 지연되거나, - 일정기간(5년)내 원산지검증 시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자가 다액의 관세를 추징 당하며 그 손해의 클레임이 제기되어 결과적으로 수출자의 영업적 손실을 초래
관세환급	- 수출품에 적용되는 환급특례법상 간이환급액은 HS를 기준으로 수출금액 1만원 당 최소 10원에서 180원까지 정해지므로 수출품의 HS Code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 과다환급, 과소환급이 발생하여 사후추징 등으로 재무적 손실의 위험이 있음
수출요건	- 상품의 수출요건은 HS Code별로 정해져 있으며 HS Code 의 오류 시 요건 확인 품목을 비요건 품목으로 수출신고 하는 경우 법규위반으로 처벌(전략물자등)

품목분류는 정확성이 요구된다. 정확하지 않은 품목분류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판정 및 협정관세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표 4-5>에서와 HS 오류 시 FTA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품목분류의 정확한 이해와 대상 물품의 품명, 구성요소, 용도 및 재질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품목분류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은 FTA원산지관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 3 절 FTA원산지 내부관리 Process

국제무역환경이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전환되면서 FTA 협정국간의 협정내용에 근거한 원산지에대한 관리 및 검증기준은 일반적인 원산지제도에 비해 보다 더 복잡하고 엄격하게 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FTA협정국간 교역을 증대시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으로 비협정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은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FTA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강력한 방법으로 협약국간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데 그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FTA원산지 증명방식은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기관증명제(Authorized Certification)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자율증명제(Self-Certification)로 구분한다.²¹⁾

원산지증명서란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교역대상물품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물품확인양식으로 우리나라는 FTA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해당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교역대상물품의 수출자, 품명, 수량 및 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고, 둘째,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셋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한다.²²⁾

또한 FTA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절차 등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수출입 거래당사자가 협정의 체약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래당사자 요건,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원산지 요건,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는 직접운송 요건,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양식 등의 형식

21) 기관증명(기관발급) : 세관, 결정권한 있는 발급기관(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자율증명(자율발급) : 수출자(한미 FTA는 수입자, 생산자 포함)

22) FTA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조 제1항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적 요건과 증명서의 발급기관, 인장(서명) 등의 절차적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FTA원산지관리는 FTA 협정국간 수출입 무역거래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되는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역물품의 원산지정보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는 <표 4-6>의 FTA원산지관리에 대한 핵심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4-6> FTA 원산지관리의 핵심내용

요건	확인 또는 검증 내용
거래요건	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발송)하고, 체약국 소재인이 수입
품목요건	양허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HS Code)에 해당
절차요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및 협정관세적용 신청 등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
원산지요건	원산지규정(일반기준 및 특별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역내 산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확인
운송요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

기업이 FTA원산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리수단과 방법, 관리수준은 기업의 규모, 조직, 업무관련성의 정도, 기업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특히 수출기업은 수출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입장이며, 수입기업은 해외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여 특혜세율을 신청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수행하여야 하는 원산지관리업무 Process는 그 내용이 다를 것이나 통상적인 기업은 수출업무와 수입업무가 공존한다고 판단되어 진다.

1) 수출기업의 원산지 내부관리 Process

수출기업이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필수 관리요소로는 원

산지결정, 원산지증명서작성, 서류보관의 업무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과정을 거쳐야하는지에 대하여 협약이나 FTA특례법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FTA 특례법 제4조제1항²³⁾은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철폐를 정하고 있어 적어도 FTA 상품교역에서 최대 수혜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 하여는 교역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하여 증명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한다. 수출상품의 원산지결정과정은 <표 4-7>과 같이 수출(공급)상품의 분석, 원재료의 분석, 원산지기준의 검토, 원산지의 결정,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서의 발급, 원산지 재결정 및 원산지의 변경 통보 등 모두 7~8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7> 원산지결정 단계별 Process

Step	내용	세부 적용 기준
Step 1	수출(공급)물품 분석	품명, 규격, HS Code, BOM 등
Step 2	원재료분석	품명, 규격, HS Code, 원재료 공급자
Step 3	원산지기준 검토	일반기준, 보충기준, 단순공정, 미소기준, 누적기준 등
Step 4	원산지 결정	FTA협정별, CTC, RVC, MC, 적용가격 분석
Step 5	원산지충족 전략	원산지결정결과 역내산이 아닐 경우 충족전략 마련
Step 6	증명서, 확인서 발급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Step 7	원산지 재결정	증명서발급 이후 원가변화, 공급선변경등이 발생시 실제원가를 기초로 원산지를 재결정
Step 8	원산지 변경 통보	원산지 재결정결과 원산지 변경시 변경 통보

우선 FTA협약별로 정하여진 원산지결정 기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출상품의 품목분류(HS Code)를 검토하고 이와 동시에 수출상품을 구성하는 원재료(BOM)에 대하여도 품목분류, 구성가격, 공급자, 원재료자체의 원산지를 파악하여야한다.

23)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수출상품이 협약이 정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 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 기준)에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후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보고 역내산으로 결정이 안 될 경우 원재료의 공급선을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한다든지 역외산 원재료의 가격비중을 낮춘다든지 하는 등 수출상품의 원산지가 합법적으로 역내산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원산지가 결정되면 결정된 원산지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하여 상대 수입자가 자국에서 특혜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비로소 FTA효과는 발생한다. 원산지증명방식은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기관증명제(Authorized Certification)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자율증명제(Self-Certification)로 구분하며.²⁴⁾ 협약은 원산지결정내용 못지않게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도 매우 중요시 한다. 특히 증명서 발급시 서명권자의 지정(FTA특례법 시행령 제2조 3항), 서명카드 비치(FTA이행고시 별지 3호), 관리대장 작성 등은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은 FTA협정별로 상이하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특혜세율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FTA실무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셋째, FTA특례법 제12조제1항²⁵⁾은 원산지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관련 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FTA특례법 제22조 제2항 제4호).

2) 수입기업의 원산지 내부관리 Process

24) 기관증명(기관발급) : 세관, 결정권한 있는 발급기관(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자율증명(자율발급) : 수출자(한미 FTA는 수입자, 생산자 포함)

25)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기업은 해외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여 특혜세율을 신청하는 입장이므로 해당 상품의 원산지결정과정과 진위여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수입기업이 수령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은 검토가 가능하며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가 치유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요구하여 특혜세율적용을 받아야한다.

특혜세율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및 특혜세율 적용신청 시점에 완벽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통관의 신속성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수입자가 신청한 특혜세율 신청내용을 관세행정당국은 수용한다. 다만 수입신고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는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수입기업은 해당 상품의 원산지결정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라 적용받은 특혜관세를 추징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수입자는 직간접적으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수출자를 상대로 무역클레임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수입기업이 FTA특례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원산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하는 것은 수출자와 동일하다.

3) FTA원산지 위험분석 내부관리 Process

FTA 협정은 FTA무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공통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원산지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원산지관리 업무위험은 협정문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과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및 관련증빙서류의 보관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원산지업무 결과가 관세행정당국의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에 위배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검증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위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FTA 원산지관리상의 위험요인

첫째, FTA 협정 특혜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증명서가 협정문에서 규

정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특혜관세 적용 신청자인 수입자와 수출자는 기본적으로 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교역상품의 품목분류와 원산지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표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과 형식적 요건이 협정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교역상품의 품목분류(HS Code)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교역상품의 HS Code는 특혜관세를 수혜받기 위한 양허대상 여부와 교역상품의 원산지기준(PSR)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품목분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기준 및 특혜관세 수혜대상에 오류가 발생한다.

셋째, 교역상품의 원재료관리(BOM)가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재료관리의 주요 요소는 원재료의 품목분류, 단가, 원산지 지위, 원산지 지위를 보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으로 이러한 자료들이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원산지결정이 이루어 질 수 없고, 결과적으로 원산지결정에 오류가 발생한다.

넷째, 원산지업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협약이 정하는 대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원산지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관세행정당국의 원산지검증 시 자료의 불충분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배제처분의 사유가 된다.

다섯째, 교역상품은 직접운송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배제 처분의 사유가 된다. 만일 제3국 경유의 경우 단순경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여섯째, 수입자가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시 수출자로부터 제시 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정성을 수입자가 완벽히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협정 체결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은 수출자만이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근거로 신청했던 특혜관세는 관세행정당국의 사후검증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일시에 추징당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상의 핵심요인 외에도 협약과 국내법이 규정하는 원산지관리요건을 위반하거나 관세행정당국의 사후검증 시 진정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FTA 원

산지관리업무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나) FTA 원산지위험의 특징

첫째, 원산지 위험 중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고액의 관세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행정당국은 수입신고시점에서는 신속한 통관편의를 위하여 수입자의 특혜관세신청을 수용하고, 이후 5년간 원산지검증을 실시한다.

수출입기업이 5년이라는 장기간 실행한 수출입 거래내역을 누적하여 검증하기 때문에 오류발생 시 위험의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전체 매출액 1,000억원 중 수입비중이 20%인 기업이 향후 5년간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는 평균 수입관세율 8%로 가정할 경우 [1,000억 x 20% x 5년 x 8% = 80억원]으로 단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의 크기는 물론 추징금액은 이미 기업회계상 원가에 반영된 금액으로 쉽게 회복 가능하지 않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둘째, 원산지결정에 책임이 없는 수입자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은 수출자만이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수입자가 검증결과에 따라 고액의 관세를 추징당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이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를 상대로 사후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문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정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은 문제해결 기간 내에 심각한 경영악화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셋째, 교역상품의 원산지 지위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혜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증명서는 교역상품의 원산지결정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로 내용의 진정성과는 별도로 협정이 규정한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관세추징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원산지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관리상의 절차위반만으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FTA 협약과 관련법규는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증빙서류의 보관의무, 서명권자의 지정, 발행대장의 구비, 서류제출명령의 이행 등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도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벌의 대상이다.

4) FTA원산지검증 대응 내부관리 Process

원산지검증(Verification of Origin)은 수출기업이 발행하였거나 수입기업에게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상으로 교역물품이 해당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물품 인지 여부를 원산지의 충족 여부, 직접운송원칙의 준수 여부, 증빙자료의 유지관리 여부 등을 관세행정당국이 확인하여 위반사항을 검증하고 제재하는 행정조치이다.²⁶⁾

이러한 원산지검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목적은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탈루를 방지하고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여 FTA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FTA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관세탈루가 만연되는 등 FTA무역에 편승한 불공정 무역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국의 자국 내 유치산업에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간 검증으로 FTA 이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FTA로 인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대외무역에 있어 원산지제도와 관련된 최초의 국제법은 1883년에 체결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이후 미국의 관세법(1890년), GATT규정(1947년), 교토협정(Kyoto Convention, 1973년), 개정 교토협정(1999년) 등으로 발전되었으며 WTO는 각국마다 상이한 원산지규정을 국제적인 통일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²⁷⁾

원산지검증제도는 국제협약, 관세법, FTA 특례법, 대외무역법등 관련법규에서 구체적인 원산지결정과 증명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역대상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포괄적으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은 대외무

26) FTA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할 수 있다.(요약함)

27) E. Ivan Kingston, "The Economics of Rules of Origin",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University of Michigan, 1994, PP.21~22.

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1-2조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 관세(GSP),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경우 부속서Ⅱ 제3조에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이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고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행해진 상품은 제3조 다항, 라항 그리고 마항을 조건으로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교역상품의 원산지충족조건을 제시하면서도 동 원산지충족조건을 언제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협약 규정은 없는 반면 한.아세안FTA의 경우 협정문 부속서3에 상세한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동 부속서 부록1에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를 마련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한 운영절차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우리나라 FTA특례법은 검증절차와 벌칙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국제교역에 있어서 교역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많은 국제협약이 존재하나 유독 FTA협약에서는 원산지검증의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림 4-1>과 같이 원산지검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검증을 검증주체로 구분하면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생산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요청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으로 하여금 수출자와 생산자를 확인하도록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는 간접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수출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혼합검증이 있으며 검증

방법은 서면검증과 현지 방문검증이 있다.²⁸⁾



<그림 4-1> 원산지검증 추이

출처 : 관세청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가) FTA원산지검증의 특징

FTA 원산지검증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원산지검증 대상자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FTA 원산지검증은 협정관세의 특혜를 받은 해당 수입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국내 및 국가간 거래 관련자 모두가 검증의 대상이 됨으로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을 수입한 국내 수입자는 물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상대국의 증명서 발급기관, 수출자, 생산자 및 원재료 공급자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검증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계약 상대국간 신뢰관계와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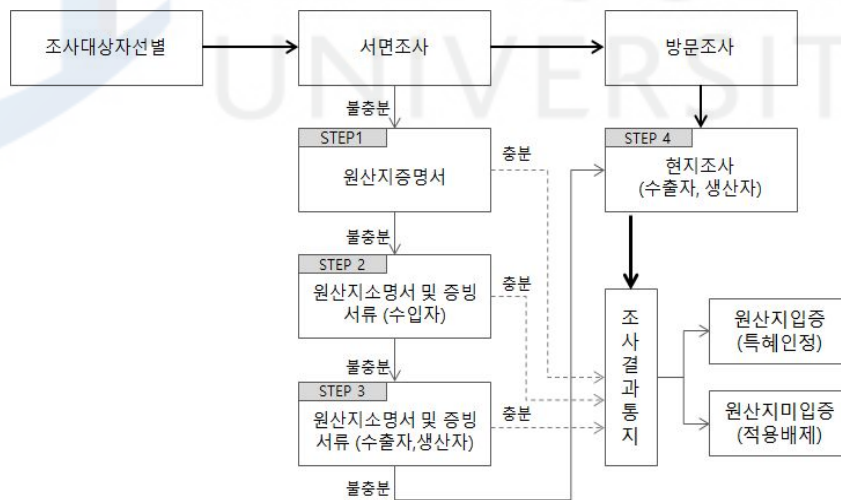
둘째, 원산지검증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FTA 원산지검증은 협정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는 다양성, 동일한 HS 품목이라도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다는 복잡성, 원산지결정기준 자체가 국제협약에 기초한 품목 분류 및 관세평가의 지식을 요하고 있고, 더 나아가 회계 및 생산공정 전반을 이해하여야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산지검증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고도의 검증 기법 연구와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28) 한·미 FTA협정의 경우 협정문 제6.18조 제1항에 의거 기본적으로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 조항 라호, 협정문 제4.3조에 필요한 경우 간접검증방식을 별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체약상대국 등 국가 간 상호주의에 의한 신뢰관계 구축 및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수출자, 생산자 등 검증대상자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에 이들의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을 직접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수출국 세관당국의 협조 없이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산지검증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신뢰관계 구축 등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나) FTA원산지검증의 절차

원산지검증을 검증주체로 구분하면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생산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요청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으로 하여금 수출자와 생산자를 확인하도록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는 간접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수출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혼합검증이 있으며 검증 방법은 서면검증과 현지 방문검증이 있다.



<그림 4-2> 원산지검증절차

출처 : 관세청 원산지지침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함

원산지검증절차는 먼저 검증대상이 정해지면 서면조사를 진행하며 서면조사결과 충분치 않은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를 조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협정세율 적용 배제등의 처분을 취한다. 협약과 법이 정하는 원산지검증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4-2>와 같다

다) FTA 원산지위반사례 분석²⁹⁾

(1) 수출원산지 검증사례 1 (자동차) : 원산지 적용 오류

우리나라에서 수입부품, 국내부품 및 중간재를 투입하여 완성차를 생산하고 이를 유럽의 스위스로 수출한 경우로서 원산지 기준을 위배한 사례이다. 즉 MC 비율 계산 시 공장도기준가격(Ex-Works)에서 환급세액을 미공제, 공장출고 이후 운반비용 미공제 및 환율적용 오류 등의 사유로 해당 수출기업에서 계산한 MC 비율 보다 평균 3%정도 초과된 43%로 검증 되었다. 이에 따라 스위스의 수입업체는 한-EFTA FTA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였다.

<표 4-8> 수출원산지 검증사례 1

품명	수출국	적용협정	원산지기준	검증배경	조사결과
자동차 (HS 8703)	한국	한-EFTA FTA	MC 40%	사전검증요청	일부모델 40% 초과
수입부품 국내부품 중간재	생산 ⇒	한국(완성차)	수출 ⇒	스위스 수입국	

(2) 수출원산지 검증사례 2 (센서 램프) : 현지 수입자 C/O 허위 발급

29)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세미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음

우리나라에서 수입재료와 국내재료를 투입하여 센서램프를 조립 생산하여 유럽의 스위스에 수출한 경우로서 스위스 현지 수입업자가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C/O를 허위로 발급하여 현지세관당국에 제출한 사례이다. 즉 스위스 현지 세관당국의 검증요청에 의해 원산지기준 CTH 혹은 MC 50% 적용 대상품목에 대하여 수출자가 C/O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현지 수입자가 허위로 C/O를 발급하여 세관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4-9> 수출원산지 검증사례 2

품명	수출국	적용협정	원산지기준	조사배경	조사결과
센서램프 (HS 8539.39)	한국	한-EFTA FTA	CTH or MC50%	스위스 세관 검증요청	수입자의 C/O 허위 발급 판명
국내재료 수입재료	조립 생산 ⇒	한국(센서 램프)	수출 ⇒ C/O 미발급	스위스 C/O 허위 발급	

(3) 수출원산지 검증사례3 (전자제품):수출자 C/O요건 불충분 오류발급

우리나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면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명, 규격 등을 잘못 기재하고 서명도 누락하여 수입국 세관당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검증 요청하였던 사례이다. 검증결과 수출기업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지 및 부주의 등에 따른 부실발급으로 판명되었다. 각 FTA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리스크이다.

<표 4-10> 수출원산지 검증사례 3

품명	수출국	적용협정	원산지기준	조사배경	조사결과
가정용 전열기 (HS 8509)	한국	한-ASEAN FTA	CTH	수입국 세관 C/O검증요청	수출자 오류발급
국내재료 수입재료 투입	조립 생산 ⇒	한국 (가정용 전열기)	수출 ⇒ C/O 자율발급	수출자 C/O 오류발급	

(4) 수입원산지 검증사례 1 (스포츠 신발) : 원산지기준 오류 적용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후 국내로 수출된 스포츠 신발에 대해 부가가치기준 (RVC 40%)을 적용하면서 해외 중개업자의 마진이 포함된 제3국 발행 Invoice 가격을 기초로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한 사례이다. 현지 검증결과 RVC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산지를 부인하고 수입관세를 추징하였다.

<표 4-11> 수입원산지 검증사례 1

품명, 수출국	적용협정	PSR	검증배경	검증방법	검증 결과
스포츠 신발, 인도네시아	한-ASEAN FTA	RVC 40%	저임 노동의존 산업제품 + 원재료 수입의존	현지 공동검증	제3국 송품장가격으 로 부가가치 계산, 원산지불인정 수입관세 추징
대만에서원재료 유 상 공 급 받아 생 산 (13\$)	대만 중개업자 에게 납품(20\$)		한국으로 수출 (대만 Invoice Price 25\$)	인도네시아 C/O 발급(25\$)	수출자 RVC : (25-13)/25=48% 검증결과 RVC: (20-13)/20=35% 원산지불인정 수입관세 추징

(5) 수입원산지 검증사례 2 (스위스 Gold Bar):세번변경기준 불충족 사례

스위스 Gold Bar에 대해 한-EFTA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인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여 국내로 수입하였다. 한국세관과 스위스 세관의 공동검 증 결과 저순도 금괴(Dore, HS 7108.12)와 금괴 스크랩(HS 7112)을 정련 가공 하여 고순도 금괴(HS 7108)로 만든 것으로 일부 수입 원료가 CTSH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

입관세를 추징한 사례이다.

<표 4-12> 수입원산지 검증사례 2

품명, 수출국	적용협정	원산지기준	검증 배경	검증기관	검증 결과
금괴, 스위스 (HS 7108)	한-EFTA FTA	CTSH(6단위세 변변경기준)	금괴 수입급증	공동검증	원산지기준 불충족 수입관세 추징
스위스로 저순도 금괴 공급 스위스로 스크랩금괴 공급		정련 가공 ⇒	스위스에서 고순도 금괴 가공(C/O발급)	⇒ 한국으로 수출	

(6)수입원산지검증사례3 (아웃도어 의류):원산지기준 및 품목분류 오류

제3국에서 원단을 공급 받고, 수입자인 한국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 받아 완제품을 생산한 후 한국으로 수출한 경우로서 고가의 제3국 원단가격 비중이 40~80%를 차지하고, MC 미충족, 제3국 원단가격 누락 및 품목분류 오류를 범한 사례이다. 해외임가공제품의 수입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이며, 검증결과 수입 관세를 추징하였다.

<표 4-13> 수입원산지 검증사례 3

품명, 수출국	적용협정	PSR	검증 배경	검증기관	검증 결과
아웃도어 의류, 중국	한-APTA FTA	M C 40%	해당품목 시장 급성장 해외임가공 수입급증	한국세관	MC미충족,원단가격 누 락, 품목분류 오류 수입관세 추징
제3국에서 고가의 원단공급 한국기업이 제3국에서 수입한 원단, 원·부자재료 공급		중국기업이 공급 받은 재료로 임가공생산 (C/O 발급)		⇒ 한국으로 수출	

제 4 절 FTA 협력업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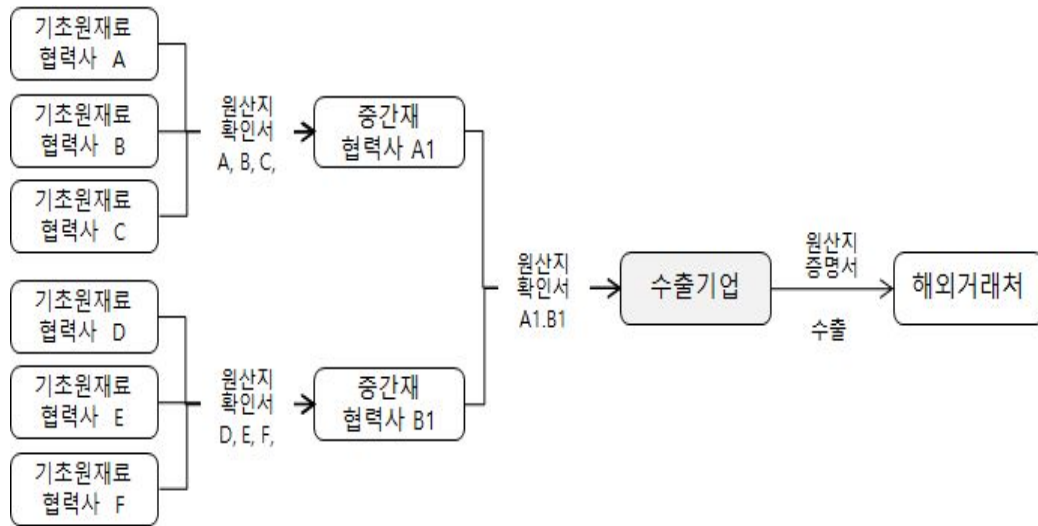
무역기업의 상품교역에서 FTA활용의 최종 수단은 원산지증명서이다. 제4장 제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역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한 다음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한 것이 원산지증명서이고 이것을 근거로 특혜관세를 통한 수출자의 수출경쟁력 또는 수입자의 관세혜택이 비로소 발생한다.

무역기업이 교역상품(농.수.축산물등 1차 상품이 아닌 공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최하위 원재료부터 최상위 완제품을 자체적으로 일관 생산하는 기업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많은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원재료, 부품 및 부자재 등을 공급 받으며 심지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제품등 첨단제품인 경우 수많은 제조 공정중 일부를 전문공정이 가능한 기업에게 전담시키는 등 복잡한 제조Process를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 공산품 제조행태이다.

이렇게 복잡한 제조기업간의 협력관계는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전술하였듯이 교역상품의 FTA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교역상품을 구성하는 수많은 원재료에 대한 각각의 HS Code, 가격, 원재료자체의 원산지등의 정보를 근거로 하며, 교역상품의 최종 수출자는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야하므로 <그림 4-3>과같이 협력업체의 도움이 없이는 진실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상술하면 실무적으로 최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생산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한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중간재 생산자는 자신이 제조한 중간재에 대하여 원재료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와 자신의 원가정보를 근거로 중간재의 원산지를 결정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최종 수출자에게 공급한다. 이후 최종 수출자는 중간재 생산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와 수출자 자신의 원가정보를 근거로 수출상품의 FTA원산지를 결정한 다음 최종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송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제조기업간의 협력관계는 1~2차의 단순협력관계일 수도 있으나 그 이상의 다중협력관계일 수도 있으며, 그 협력관계가 FTA역외국을 포함하는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질수 밖에 없다.



<그림 4-3>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증명서의 관계도

출처: 원산지실무상의 흐름을 감안하여 자체 작성

이상과 같이 기초원재료 제조 기업은 자신이 공급하는 기초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중간재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다시 중간재 제조 기업은 자신의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최종수출자에게 제공한다. 이후 최종 수출기업은 자신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므로 기초원재료 및 중간재를 공급받는 협력업체로부터 정확한 원산지확인서를 수령하여야 함은 물론 협력업체의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김윤식, 2014, 이형대, 2015)

FTA원산지관리 Process에서 수출기업이 협력업체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FTA협약이 요구하는 원산지 정합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의 모든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협력업체가 자사에 공급하는 물품의 HS Code가 정확한지, 공급물품의 FTA별 원산지 기준이 정확하며 기준에 따라 원산지지위가 결정되었는지 등등 FTA원산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관세지식이 포함된다.

최근 수출기업은 협력업체와 FTA관세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바 구체적 방법으로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강화, 협력업체의 주기적

평가, 생산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원산지교육과 검증 등을 들 수 있다.

제 5 절 FTA원산지관리 만족도

본 연구에서 만족도를 다루고자하는 주요 이유는 선정된 가설이 실질적으로 유효한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유효할 경우 그 유효성의 정도와 내용이 선정된 변수인 관세지식서비스, FTA원산지 내부관리Process, 협력업체 관리와의 관계에서 기업의 원산지위험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서비스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Parasuraman, et al.(1985)등에 의해 개발되고 (송건섭, 이환범, 2002) 연구모형에 제시된 서비스품질수준은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능력, 예절, 신용도, 안전성, 접근가능성, 의사소통, 고객에 대한 이해 등의 10가지범주를 기본바탕으로 두며,(송건섭, 이곤주, 윤종갑, 2005) 고객만족은 고객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 것을 기대이상으로 충족시켜 감동시킴으로써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최현정, 2005)라는 선행연구가 있다.

관세지식서비스가 기업의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킨다는 전제하에 관세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인 무역기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무역기업이 관세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경로를 관세청 및 세관등 국가행정기관, 무역협회 및 코트라등 공법인, 사기업으로서 관세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세법인, 인터넷 포탈, 기타 방법 등 5가지로 한정하여 각 경로별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 다른 변수인 ‘기업의 FTA원산지 내부관리Process’는 기업의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킨다는 전제하에 process상의 어떤 요인이 기업의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주효한가를 측정하고자 관리기준 여부, 외부전문가의 정보제공, 관리체계의 효율성, 편리성, 자가검증 여부 등 6가지요인으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업체의 적정한 관리는 기업의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킨다는 전제아래 협력업체 선정기준 여부, 협력업체 평가, 협력업체와의 정보공유, 협력업

체 교육실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실시 등 5개 요인별로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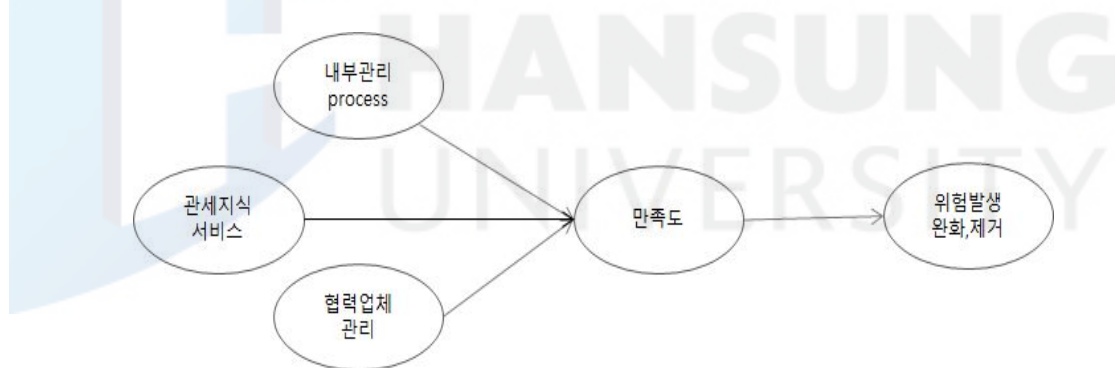


제 5 장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

제 1 절 연구 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무역기업들이 FTA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관세업무리스크 중 FTA무역환경에서 가장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FTA 원산지관리와 관련된 업무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5-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연구모형에서는 FTA 원산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요인을 관세지식서비스, 기업 내부process관리, 협력업체관리로 한정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원산지관리상의 위험발생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5-1> 연구 모형도

FTA원산지관리에 필요한 관세지식 중 필수적으로 판단되는 품목분류(HS), 원산지기준(PSR), BOM관리, 증명서작성지식, 검증에 관한 지식의 5개 항목을 관세지식으로 하는 독립변수(1)로 채택하였고,

대부분의 무역기업들이 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갖춰야할 관리요인으로 평가되는 관리기준설정과 실행정도, 외부전문가 지식활용정도, 관리체계의 효율성 정도, 관리체계의 편리성 정도, 자율검증(Self Audit)실행

정도, 자율검증의 객관성 정도의 6개 항목을 내부관리process로 하여 독립변수(2)로 채택하였다.

또한 현재의 기업구조상 최하위 원재료부터 최상위 완제품을 자체적으로 일관 생산하는 수출기업모델보다는 수많은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산지관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바 수출기업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선정 기준의 적정성, 평가기준의 적정성, 원산지정보공유의 적정성, 협력업체 교육의 적정성, 협력업체의 원산지 검증의 5개 항목을 협력업체관리로 하는 독립변수(3)으로 채택하였다.

<표 5-1> 변수별 수행요인 List

분야구분		항목
독립변수	관세지식서비스	① 품목분류(HS)지식 ② 원산지기준(PSR) ③ 원재료(BOM) 관리 ④ 원산지증명서 작성 ⑤ 원산지 검증
	내부관리Process	① 관리기준 설정과 실행 ② 외부전문가 지식 활용 ③ 관리체계의 효율성 ④ 관리체계의 편리성 ⑤ 자가검증(self audit) ⑥ 자가검증의 객관성
	협력업체 관리	① 선정기준 ② 평가기준 ③ 정보공유 ④ 협력업체 교육 ⑤ 협력업체의 원산지 검증
매개변수 (만족도)		① 관세지식서비스 분야 5개 항목 ② 내부Process 관리부문 6개 항목 ③ 협력업체 관리부문 6개 항목
종속변수		① 품목분류 ② 원산지기준(PSR) ③ 원산지증명서작성 ④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⑤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신뢰 ⑥ 원산지검증에 대한 준비정도 ⑦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⑧ 원산지피해규모

이상의 분석과 함께 각 변수에서 추출한 17개 요인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채택하여 원산지관리업무 위험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FTA원산지관리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은 수출부문과 수입부문을 합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원산지관리에서 위험을 제거(완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 관리요인인 품목분류, 원산지기준(PSR), 원산지증명서작성,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신뢰 등 5개요인과 그 밖의 관리요인을 묶어서 원산지 검증에 대한 준비정도를 1개의 요인으로 모두 6개 요인을 위험을 완화 또는 제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수출입기업이 원산지로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 정도를 관리요인과 금액으로 구분하여 2개 요인으로 설정함으로서 모두 8개 요인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제 2 절 가설의 설정

이형대(2015)의 「한미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방안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방안으로 협정별 원산지 관련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유지할 것, 원산지 전문그룹을 활용할 것, 협력업체간 협업체계를 유지할 것등³⁰⁾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김윤식은 2014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FTA 원산지검증 현황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수출입기업이 FTA검증에 대응하기 위 하여는 전문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며, 협력업체와의 협력,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지식활용, 정기적 점검, 전문가 활용, 자료보관의무 준수 등³¹⁾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관세지식이 기업의 관세업무 위험을 완화 내지는 제거시킨다는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FTA무역환경에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업무의 위험관리를 위한 대응전략을 도출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관세지식서비스가 기업의 FTA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고 이와 함께 기업내

30) 「한미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방안연구」 이형대 (2015)

31) 「FTA 통상환경하에서 우리기업 의 대응전략」, 대한상공회의소주관(2014년 11월)

부의 원산지관리 Process가 추가될 경우 위험관리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역기업이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전문 관세지식을 수렴하는 단계, 전문 관세지식을 통하여 기업내부의 원산지를 관리하는 단계와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수행요인들을 고려한 연구모형의 설정과정에서 채택한 각 변수들을 적용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H1> : 관세지식서비스는 무역기업의 원산지관리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무역기업들의 지식수준이 낮을 경우 전문 관세지식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로인해 원산지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H1-1>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산지위험의 노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관세지식서비스는 품목분류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산지기준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7>	관세지식서비스는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8>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산지로류 피해규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FTA 협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지식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실제 원산지관리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무역기업들은 품목분류 (HS), 원산지결정기준(PSR), 원재료(BOM) 관리, 원산지증명서(CO)작성, 원산지검증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여야 원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김윤식, 2014) 또한 무역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외부의 전문적인 관세지식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가설 H2> : 기업 내부의 원산지관리process는 무역기업의 원산지관리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윤식, 2014) 적절한 원산지관리process는 위험요소를 해소시키는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원산지 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H2-1>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원산지위험의 노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품목분류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원산지기준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6>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7>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8>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원산지로류 피해규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의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 단계에서 채택한 독립변수인 품목분류 (HS), 원산지기준(PSR), 원재료(BOM)관리, 원산지증명서(CO)작성, 원산지검증 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한 구체적인 내부관리 process의 정확한 실행은 원산지 위험요소를 완화 내지 제거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복잡성과 엄격성이 강조되는 원산지관리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며, 아울러 원산지 업무기준과 절차를 모든 구성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리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자율적인 원산지검증(self audit)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에 환류(feed back)시키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자체적인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때 준법성이 확보된 정도를 평가하여 원산지관리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키는

물론 관세당국의 사후조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요인들이 반영된 실행은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업무 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키는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 : 협력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협력업체관리는 원산지관리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윤식,2014, 이형대,2015). 또한 원산지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H3-1>	협력업체관리는 원산지위험의 노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협력업체관리는 품목분류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협력업체관리는 원산지기준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협력업체관리는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5>	협력업체관리는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6>	협력업체관리는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7>	협력업체관리는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8>	협력업체관리는 원산지로류 피해규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역기업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최하위 원재료부터 최상위 완제품을 자체적으로 일관 생산하는 수출기업은 거의 없으며 수많은 협력업체로부터 원재료, 부품 및 부자재 등을 공급 받았을 경우 해당 원재료, 부품 및 부자재 등에 대한 원산지관리도 협정별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출물품 생산기업은 협력업체들로부터 공급 받는 제품의 원산지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협력업체 선정 시 FTA 협정에서 규정한 제반 기준에 입각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 업무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협력업체의 원재료, 부품 및 부자재의 생산 또는 조달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원가회계를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규정에 부합한 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원산지확인서는 무역기업이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초가 되므로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는 무역기업의 원산지관리 위험제거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자료수집 및 변수정의

1) 모집단과 표본 설정

본 연구의 분석을 목적으로 FTA원산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500여개의 무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12개 였다. 회수 설문지가 저조한 이유는 설문 내용이 FTA라는 매우 전문적 분야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모집단 구성원은 설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질문대상자는 원산지업무를 범위 및 체계를 중심으로 대기업, 중견(소)기업군으로 세분화시켰으며, 업무체계는 수출기업의 자체업무와 협력업체의 업무로 구분하여 업무처리의 비중 정도 및 협력관계를 5단계로 파악하였다.

2) 변수의 정의와 설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모형구축에 설정한 변수의 개념적 정의를 검증하기 위해 3개의 가설(부속 가설 19개)로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고, <표5-2>에서와 같이 총 23개의 질문(설문항목 74개)을 통해 측정하였다.

각 설문 문항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인 내용으로 무역기업들이 기존에 제공받고 있는 관세지식서비스의 경로와 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산지업무 처리과정, 위험요소를

완화 내지는 제거하기 위한 원산지업무의 범위와 체계에 대한 설문을 제시하였고, 원산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역기업들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문하였다.

가) 독립변수 ‘관세지식서비스’³²⁾에 대한 정의

무역기업들이 FTA 협정내용에 적합하게 원산지관리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오류에 의한 위험을 완화 내지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관리에 치중하여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무역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지식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의 요인으로 구성된 관세지식서비스를 독립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HS(품목분류)에 대한 지식은 수출상품은 물론 수출상품을 구성하는 수많은 원재료에 대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지식이며, 특히 수출상품의 품목분류번호(HS Code)는 원산지증명서 필수 기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분류지식은 원산지관리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원산지관리의 오류발생에 따른 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산지결정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제4장 제3절(원산지기준)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협정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완전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원산지관리 및 검증 시 오류발생에 따른 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출상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품목분류(HS Code)와 가격, 원산지 지위는 수출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BOM관리는 원산지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원산지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역시 특혜관세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고 그 작성과정이 복잡하므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지식은 원산지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킬 수 있을 것이다.

32)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김윤식은 2014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FTA 원산지검증 현황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원산지검증 대응방안으로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등 전문지식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형대(2015)는 한미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에서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제시하는등 원산지관리와 관련하여 관세지식의 중요성을 제시.

다섯째, 특히 원산지업무 수행이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검증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로 원산지를 관리한다면 보다 적법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가정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산지검증 위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일 관세지식서비스가 없을 경우 원산지관리업무의 위험을 완화시키는데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독립변수 '내부관리 Process'³³⁾에 대한 정의

무역기업들이 FTA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기업의 내부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

관세업무 리스크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인 김영춘(2007), 정창근(2010) 등의 연구결과도 리스크 관리의 4단계를 계획, 집행, 점검, 개선으로 정의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도 기업의 원산지 관리Process를 관리기준설정과 실행, 외부 전문가 지식활용, 관리체계의 효율성 과 편리성, 자가 검증 주기적 실행, 자율검증의 객관성을 요인으로 하는 내부관리Process를 원산지위험을 완화 내지는 제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첫째, 무역기업이 FTA 원산지관리 기준 및 절차를 완전히 숙지하고 내부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 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이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 합리성 및 투명성을 내포한 업무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과의 협정내용에서 복잡하게 규정한 원산지증명과정, 형식, 서명 및 발급 등의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원산지관리에 전문 관세지식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원산지검증 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산지관리업무 자체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통제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족할 경우 외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

33)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김윤식은 2014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FTA 원산지검증 현황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원산지검증 대응방안으로 전담조직과 인력확보를 제시함으로써 원산지 관리에 있어서 기업내부의 관리process가 중요함을 제시.

셋째, 원산지관리업무가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수행될 경우 원산지검증 업무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TA 원산지기준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관리 업무체계를 표준화 및 매뉴얼화 시켜 실무자들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담당자가 용이하게 업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기업 내부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면 원산지검증 업무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적으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실행결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무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원산지검증 위험을 완화 내지는 제거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내부적인 원산지검증이 객관적이고 준법성을 반영시킨 경우 원산지검증 업무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준법성의 경우 원산지업무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는 체약국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의한 클레임 발생, 관세당국의 사후조사에서의 위법사실 적발 등에 사전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에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 업무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의 표준매뉴얼화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원산지검증 업무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독립변수 ‘협력업체관리’³⁴⁾에 대한 정의

수출상품의 적법한 FTA 원산지결정과 관리를 위 하여는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원산지관리의 정합성이 매우중요하다. 특히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부품 및 부자재 등을 협력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비중이 높은 경우 공급자인 협력업체가 해당 원재료, 부품 및 부자재 등에 대한 원산지

34)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김윤식은 2014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FTA 원산지검증 현황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원산지검증 대응방안으로 협력업체와의 협력을 제시하였고, 이형대(2015)는 한미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에서 협력업체간의 협업체계 구축을 제시하는등 원산지관리에 있어서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원산지검증업무의 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협력업체가 FTA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수출기업의 원산지업무 위험을 완화시키는데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업체와의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선정기준, 평가기준, 협력업체와의 정보공유 정도, 협력업체 교육, 협력업체의 원산지 검증을 요인으로 하는 협력업체 관리를 원산지위험을 완화 내지는 제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첫째, 수출기업이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협력업체로부터 공급 받기 위해 협력업체의 선정기준을 FTA원산지위험관리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수출기업이 계약국 상대방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재 및 부품 등의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FTA기준을 공지하고 그 기준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FTA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FTA 원산지업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5년 동안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협력업체가 공급하고 있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대한 원가, 제조공정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이는 협력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발생할 오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원재료 및 부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출기업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원재료 및 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내부정보임을 이유로 관련정보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다.

넷째, 수출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원산지업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FTA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업무가 근본적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

업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 물품의 생산에 관련된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련업무지식을 공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출기업이 협력업체들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협력업체들이 실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업무에 대해 객관적이고 준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선 또는 보완시킴으로써 수출기업 자체의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 매개변수에 대한 정의

매개변수의 선택은 Baron & Kenny(1986)의 매개변인에 대한 충족조건을 기준으로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정하였다.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감안하여 15개의 요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FTA 원산지관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들을 해소시킬 경우 원산지업무 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킬 가능성을 높게 할 것이라는 요소들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FTA 협정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산지관리기준과 원산지검증업무에 대해 복잡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적합하게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위험요소들은 상존하고 있다.

FTA원산지관리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은 수출부문과 수입부문을 합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FTA원산지관리에

서 위험을 제거(완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 관리요인인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PSR), 원산지증명서작성,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의 신뢰, 원산지검증에 대한 준비정도, 원산지로류로 인한 위험노출정도, 직접적 입은 피해금액정도의 8개 요인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표5-2> 설문지의 구성

설문 내용	문항수	척도
1. 원산지업무와 관련된 관세지식	5	Likert 5점
2. 기업의 내부원산지관리 process	7	
3. 협력업체 관리	6	
4. 위험노출정도	10	
5. 품목분류 위험	3	
6. 원산지기준	4	
7.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4	
8. BOM 변화	5	
9. 검증대응준비	10	
10. 수입품 C/O의 신뢰수준	1	
11. 발생손실규모	1	
12. 원산지업무관련성정도	3	
13. 인구통계학적내용	5	명목척도
14. 관세지식서비스 경로, 만족도	10	
합 계	74	

제 4 절 설문조사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8.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을 사용하였다. 둘째,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사용하였다. 넷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Regression Analysis) 및 다중회귀 분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제 6 장 연구결과

제 1 절 통계 일반사항

본문주제에 관한 연구를 위해 7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응답자의 일반사항의 결과는 다음 <표6-1>과 같다.

종업원규모는 300명 이상 11명(14.86%), 200명~300명 미만 6명(8.11%), 100명~200명 미만 5명(6.76%), 30명~100명 미만 22명(29.73%), 30명 미만 30명(40.54%)로 나타났으며,

매출은 1,000억원 이상 9명(12.16%), 500억원~1000억원 미만 2명(2.70%), 300억원~500억원 미만 7명(9.46%), 100억원~300억원 미만 18명(24.32%), 100억원 미만 38명(51.35%)로 나타났다.

연간 총매출액 중 수출입액 차지 비중은 100% 2명(2.74%), 70% 이상~100% 23명(31.51%), 40% 이상~70% 미만 24명(32.88%), 20% 이상~40% 미만 8명(10.96%), 20% 미만 16명(21.92%)로 나타났다.

수출입거래 형태는 원재료나 시설재를 직접 수입, 제품을 직접 수출 40명(29.20%), 원재료나 시설재를 국내 구매, 제품을 직접 수출 34명(24.80%), 원재료나 시설재를 직접 수입, 제품을 Local로 수출(수출자에게 납품) 22명(16.10%), 원재료나 시설재를 국내 구매, 제품을 Local로 수출(수출자에게 납품) 22명(16.10%), 원재료나 시설재를 직접 수입, 제품을 국내 판매 19명(13.90%)로 나타났으며, 수출입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0년 이상 9명(12.33%), 10년이상 21명(28.77%), 5년 이상~10년 미만 10명(13.70%), 2년 이상~5년 미만 18명(24.66%), 2년 미만 15명(20.55%)로 나타났다.

제 2 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다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

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 이상이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표 6-1> 일반적 특성

구 분		응답수(N)	비율(%)
종업원규모	300명 이상	11	14.86
	200명 ~ 300명 미만	6	8.11
	100명 ~ 200명 미만	5	6.76
	30명 ~ 100명 미만	22	29.73
	30명 미만	30	40.54
매출	1,000억원 이상	9	12.16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2	2.70
	300억원 ~ 500억원 미만	7	9.46
	100억원 ~ 300억원 미만	18	24.32
	100억원 미만	38	51.35
연간 총매출액 중 수출입액 차지 비중	100%	2	2.74
	70% 이상 ~ 100%	23	31.51
	40% 이상 ~ 70% 미만	24	32.88
	20% 이상 ~ 40% 미만	8	10.96
	20% 미만	16	21.92
수출입거래 형태	원재료나 시설재를 직접 수입, 제품을 직접 수출	40	29.20
	원재료나 시설재를 국내 구매, 제품을 직접 수출	34	24.80
	원재료나 시설재를 직접 수입, 제품을 Local로 수출(수출자에게 납품)	22	16.10
	원재료나 시설재를 국내 구매, 제품을 Local로 수출(수출자에게 납품)	22	16.10
	원재료나 시설재를 직접 수입, 제품을 국내 판매	19	13.90
수출입업무를 수행한 기간	20년 이상	9	12.33
	10년이상 20년 미만	21	28.77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3.70
	2년 이상 ~ 5년 미만	18	24.66
	2년 미만	15	20.55

<표 6-2>와 같이 일반적 특성독립변수의 신뢰도는 각각 관세지식 서비스 $\alpha = .877$, 내부원산지관리 $\alpha = .836$, 협력업체 관리 $\alpha = .801$ 로 나타났다. 매개변수 만족도는 $\alpha = .824$ 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위험 발생은 원산지검증_위험 $\alpha = .865$, 수출입 물품과 원재료의 품목분류_위험 $\alpha = .878$, 원산지기준_위험 $\alpha = .668$, 원산지증명서_위험 $\alpha = .890$, 원재료의 가격 및 BOM 변화_위험 $\alpha = .909$, 원산지검증 대응준비_위험 $\alpha = .901$, 수출상대국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_위험 $\alpha = .717$ 로 나타났다. 다만 종속변수의 원산지로류 피해규모 요인에서는 모집단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응답자수가 적었던 원인으로 측정되지 않았는바 이는 관세행정 당국의 원산지검증의 현실적인 조사결과이므로 기업비밀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응답자의 성향에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2 > 신뢰도 분석

문항구분		문항 수	Cronbach`s α 계수
독립변수	관세지식서비스	6	0.877
	내부원산지관리 process	7	0.836
	협력업체 관리	6	0.801
매개변수	만족도	15	0.824
종속변수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10	0.865
	품목분류 오류위험	3	0.878
	원산지기준 오류위험	4	0.668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	4	0.890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위험	5	0.909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	10	0.901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	5	0.717
	원산지로류 피해규모	1	—

제 3 절 관세지식서비스의 경로별 활용도와 만족도

FTA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관세지식서비스를 어떤 경로를 통하여 활용

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6-3 >과 같다. 분석 결과 관세법인(관세사)이 제공하는 관세지식서비스를 활용 한다는 응답의 점수가 Likert 5점 척도기준 M=3.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관세법인(관세사)이 제공하는 관세지식서비스의 점수가 M=3.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세지식서비스의 활용경로 5 가지 중 관세청등 국가기관 M=3.69, 무역협회등 공법인 M=3.22, 인터넷포탈 M=3.54로 수치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출입기업은 관세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만족도 역시 큰 차이는 없었다.

<표6-3 > 관세지식서비스의 경로별 활용과 만족도

구 분	활용경로		만족도	
	M	sd	M	sd
1 관세청, 세관 등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관세지식서비스를 활용 한다	3.69	0.92	3.53	0.74
2 무역협회, 코트라 등 공법인이 제공하는 관세지식서비스를 활용 한다	3.22	1.02	3.27	0.69
3 관세법인(관세사)이 제공하는 관세지식서비스를 활용 한다	3.84	0.79	3.72	0.75
4 인터넷포탈을 검색하여 취득한 관세지식서비스를 활용 한다	3.54	0.94	3.28	0.82
5 지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관세지식서비스를 활용 한다	2.96	0.90	3.07	0.83

제 4 절 내부 원산지관리 process상 핵심관리요인과 만족도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업 내 원산지관리process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4 >와 같다. 분석 결과 기업의 원산지관리체계가 효율적이면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체계가 편리하면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M=3.8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은 통상 다양한 모델과 규격으로 제조되며, 다양한 모델과 규격은 각각의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내용이 적용된다. 이로 인하여 기업이 처리해야하는 원산지관리업무는 복잡한 관세지식과 다양한 모델, 규격의 승수배 만큼 많아진다. 따라서 기업이 아무리 정확한 관세지식을 숙지한다하더라도 효율성과 신속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산지관리 업무는 매우 어려워진다.

분석결과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process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결과로 이해되며 기업이 시스템적으로 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주는 결과이다

<표 6-4 >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내부관리 process 상의 핵심요인

구 분	M	sd
1 기업내에 원산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은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3.77	0.84
2 기업의 원산지관리에 외부전문가가 제공하는 관세지식정보는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3.77	0.80
3 기업의 원산지관리체계가 효율적이면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3.81	0.68
4 기업의 원산지관리체계가 편리하면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3.81	0.72
5 기업이 자체적인 원산지검증(SELF -AUDIT)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면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3.72	0.71
6 기업의 자체적인 원산지검증(SELF -AUDIT)이 객관적이고 준법적이면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3.69	0.81

또한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업 내 원산지관리 process상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분석 결과 <표 6-5>와같이 기업의 원산지관리에 외부 전문가가 관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응답이 Likert 5점 척도기준 M=3.54로 가장높고, 이어 기업내 관리기준 마련이 M=3.39, 기업의 자가검증(self-audit)이 M=3.08순으로 나타났다.

<표 6-5 >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업 내 관리에 대한 질문 만족도

구분	M	sd
1 기업내에 원산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경우	3.39	0.72
2 기업의 원산지관리에 외부 전문가가 관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	3.54	0.65
3 기업내 원산지관리체계의 효율성에 대하여	2.88	0.72
4 기업내 원산지관리체계의 편리성에 대하여	2.84	0.83
5 기업이 자가 원산지검증(SELF -AUDIT)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3.16	0.68
6 기업이 자가 원산지검증(SELF -AUDIT)을 객관적이고 준법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3.08	0.68

제 5 절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조직

무역기업이 원산지관리 전문부서(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규모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6>과 같다. 분석 결과 전담조직이 없다는 응답이 29.73%로 가장 높았다. 물론 본 연구 조사대상기업의 85.14%가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그중에서도 종업원 30명 미만의 소기업이 40.54%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FTA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최소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이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질문지 구성상 전담조직 구성인원을 “5인이상- 3인- 2인-1인- 없다”로 구성하여 “검직”이 질문지 구성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표6-6 > 원산지관리 조직에 관한 질문

구분	없다	1인	2인	3인	5인이상
1 원산지관리 전문부서(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규모는 어느 정도 이십니까?	22 (29.73)	18 (24.32)	16 (21.62)	11 (14.86)	7 (9.46)

제 6 절 무역기업의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FTA원산지와 관련하여 무역기업이 위험에 노출되는 관점은 다양하다. 관세행정당국의 검증시행으로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벌금, 과태료 납부해야하는 재무적 피해는 발생형태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다. 반면 FTA로인한 거래선과의 분쟁이 거래선 이탈로 이어지는등의 비재무적 피해는 향후 FTA가 심화될 경우 더욱 다양화된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무역기업이 처한 환경에서 발생하였을 노출위험에 관한 질문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7>과 같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확신 없이 원산지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Likert 5점 척도기준 M=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상수준인 M=3.00보다 낮은 수준이며 여타의 위험들은 Likert 5점 척도기준 M=2.00 이하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후 10년이 넘었지만 검증이 까다롭고 철저한 한.EU FTA, 한미FTA는 발효후 채 5년이 안되어 본격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몇몇의 기업이 FTA검증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그러한 피해가 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FTA원산지오류시 발생하는 피해는 발생형태가 다양하고 발생시 피해 규모가 크며, 오류가 누적되는 경향으로 한번 발생하면 기업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을 기업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7 절 무역기업의 원산지검증 준비정도

원산지검증의 대응준비 정도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8>과 같다. 분석 결과 수출(납품)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한국관세청 또는 상대국 관세행정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진위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상대국 수입자가 관세를 추징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M=3.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도 Likert 5점 척도기준 통상수준인 M=3.00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은 비교적 원산지위험을 인지하고 그 대응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6-7 > 원산지검증 관련한 위험정도에 관한 질문

구분	M	sd
1 최근 5년간 FTA원산지 위반으로 관세를 추징당한 경험이 있다	1.47	0.71
2 최근 5년간 FTA원산지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다	1.28	0.54
3 최근 5년간 FTA원산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다	1.28	0.54
4 최근 5년간 FTA원산지 위반으로 협정세율 배제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	1.35	0.65
5 최근 5년간 원산지 조사(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1.66	0.93
6 최근 5년간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	1.88	0.95
7 최근 5년간 FTA문제와 관련하여 거래선이 이탈되었거나 그러한 위험을 예감한 경험이 있다	1.96	1.09
8 최근 5년간 해외 무역파트너(협력업체)와 FTA문제와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	1.93	1.10
9 최근 5년간 확신 없이 원산지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2.31	1.10
10 최근 5년간 회사내 자체적인 원산지검증 (SELF AUDIT)을 해본 경험이 있다	1.82	0.83

<표 6-8> 원산지검증의 대응준비 정도에 관한 질문

구분	M	sd
1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활용하여 얻는 이익만큼 같은 규모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3.53	0.97
2 수출(납품)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한국관세청 또는 상대국 관세행정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진위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상대국 수입자가 관세를 추징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3.61	0.86
3 관계당국으로부터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당사가 수출하는 물품의 FTA혜택이 해당국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3.53	0.85
4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5년이내에는 언제든지 한국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와 수입자인 당사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당사가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3.55	0.91
5 관계당국으로부터 수입품의 원산지증명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당사가 해당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FTA혜택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3.50	0.88
6 FTA활용에 있어서 수출입자간에 주고받는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의 원산지 진위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요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3.59	0.77
7 FTA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수출입물품의 국제운송시 경유지를 거치지 않는 직접운송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3.57	0.81
8 FTA를 활용한 원산지증빙서류(수출필증,수입필증,선적서류,원산지증명서,수출물품원가자료및BOM등)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3.58	0.86
9 FTA를 활용한 원산지관련서류는모두 보관되어있고 언제라도 관계기관에 제출 가능한 상태다	3.11	0.93
10 원산지증빙서류는 수출필증 또는 수입필증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선적서류등)를 일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되어있다	3.11	0.91

제 8 절 독립변수의 유의성 분석

독립변수(I) 관세지식서비스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여부를 분석하고자 선형회귀(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6-9> 와 같이 관세지식서비스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원산지위험 노출정도(F 4.377, P <.05), 원산지기준 오류위험(F 4.082, P .05),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F 5.628, P <.05),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위험(F 8.628, P <.01),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F 39.308, P <.001)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표 6-9> 관세지식서비스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변 인		B	R ²	t	F
1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0.212	0.057	2.092*	4.377*
2	품목분류 오류위험	0.097	0.008	0.777	0.604
3	원산지기준 오류위험	0.216	0.054	2.020*	4.082*
4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	0.307	0.073	2.372*	5.628*
5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위험	0.411	0.107	2.937**	8.628**
6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	0.577	0.353	6.270***	39.308***
7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	0.163	0.034	1.583	2.505
8	원산지오류 피해규모	0.104	0.023	1.297	1.682
*<.05,**<.01,***<.001					

독립변수(Ⅱ) 내부 원산지관리 PROCESS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여부를 분석하고자 선형회귀(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6-10> 와 같이 내부 원산지관리 PROCESS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F 4.273, P <.05),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F 30.246, P <.001)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표 6-10> 내부관리 PROCESS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변 인		B	R ²	t	F
1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0.181	0.031	1.511	2.283
2	품목분류 오류위험	-0.06	0.002	-0.413	0.681
3	원산지기준 오류위험	0	0	0.004	0
4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	0.314	0.056	2.067*	4.273*
5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위험	0.323	0.049	1.922	3.693
6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	0.615	0.296	5.500***	30.246***
7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	0.186	0.032	1.536	2.36
8	원산지오류 피해규모	0.081	0.01	0.847	0.717
*<.05,**<.01,***<.001					

독립변수(Ⅲ) 협력업체관리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여부를 분석하고자 선형회귀(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6-11> 와 같이 협력업체관리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원산지위험 노출정도(F 6.252, P <.05),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F 9.150, P <.01),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F 13.222, P <.001),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F 7.982, P <.01)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표 6-11> 협력업체관리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변 인		B	R ²	t	F
1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0.31	0.08	2.500*	6.252*
2	품목분류 오류위험	0.091	0.005	0.587	0.345
3	원산지기준 오류위험	0.212	0.034	1.582	2.504
4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	0.474	0.113	3.025**	9.150**
5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위험	0.236	0.023	1.302	1.694
6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	0.474	0.155	3.636***	13.222***
7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	0.338	0.101	2.825**	7.982**
8	원산지오류 피해규모	0.148	0.032	1.53	2.341
*<.05,**<.01,***<.001					

제 9 절 매개검증 효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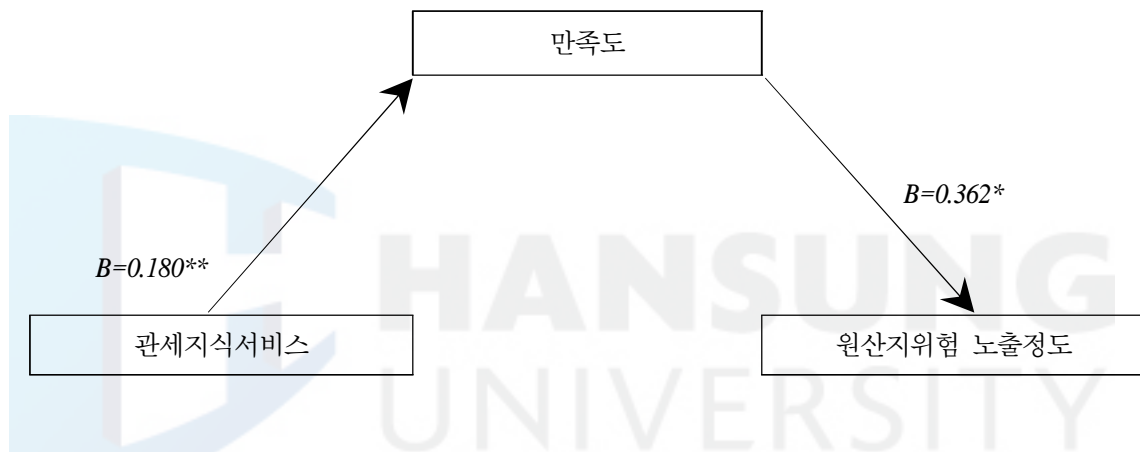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변인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며,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야 하고, 넷째, 위의 두 경로를 통제했을 때, 전에는 유의미하던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이중 첫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은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다.

1) 관세지식서비스가 원산지위험노출정도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관세지식서비스가 원산지검증_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6-12>와 같다. 분석결과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관세지식서비스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4.377, $p<.05$) 분석결과 2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관세지식서비스는 매개변인인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7.437, $p<.01$)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 된 3단계 검증에서 매개변인인 만족도는 종속변수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4.371, $p<.001$) 독립변인인 관세지식서비스의 영향은 3단계 검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매개변수 만족도는 완전매개 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6-12 > 관세지식서비스가 원산지위험노출정도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R ²	t	F
독립 → 종속	관세지식서비스 →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0.212	0.057	2.092*	4.377*
독립 → 매개	관세지식서비스 → 만족도	0.180	0.094	2.727**	7.437**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관세지식서비스 → 원산지위험노출정도	0.147	0.110	1.410	4.371*
	만족도 → 원산지위험노출정도	0.362		2.042*	
종속변수: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 $<.05$,** $<.01$,*** $<.001$					

2) 관세지식서비스가 품목분류 오류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관세지식서비스가 원재료의 품목분류_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6-13>와 같다. 분석결과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관세지식서비스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분석결과 2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관세지식서비스는 매개변인인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7.437$, $p<.01$)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 된 3단계 검증에서 매개변인인 만족도는 종속변수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6.731$, $p<.01$) 독립변인인 관세지식서비스의 영향은 3단계 검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매개변수 만족도는 완전매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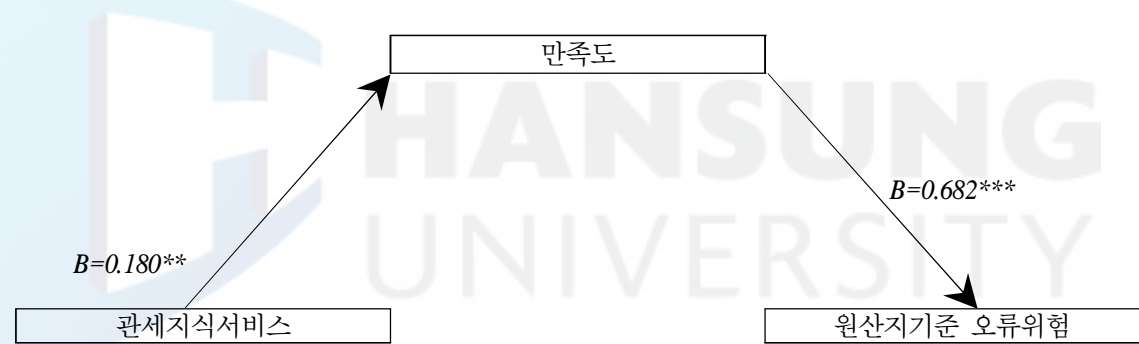
<표 6-13> 관세지식서비스가 품목분류 오류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R ²	t	F
독립 → 종속	관세지식서비스 → 품목분류 오류위험	0.097	0.008	0.777	0.604
독립 → 매개	관세지식서비스 → 만족도	0.180	0.094	2.727**	7.437**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관세지식서비스 → 품목분류 오류위험	-0.036	0.159	-0.295	6.731**
	만족도 → 품목분류오류위험	0.738		3.572**	
종속변수: 품목분류 오류위험					
* $<.05$,** $<.01$,*** $<.001$					

3) 관세지식서비스가 원산지기준오류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관세지식서비스가 원산지기준_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6-14>와 같다. 분석결과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관세지식서비스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4.082$, $p<.05$) 분석결과 2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관세지식서비스는 매개변인인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7.437$, $p<.01$)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된 3단계 검증에서 매개변인인 만족도는 종속변수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0.069$, $p<.001$) 독립변인인 관세지식서비스의 영향은 3단계 검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매개변수 만족도는 완전매개 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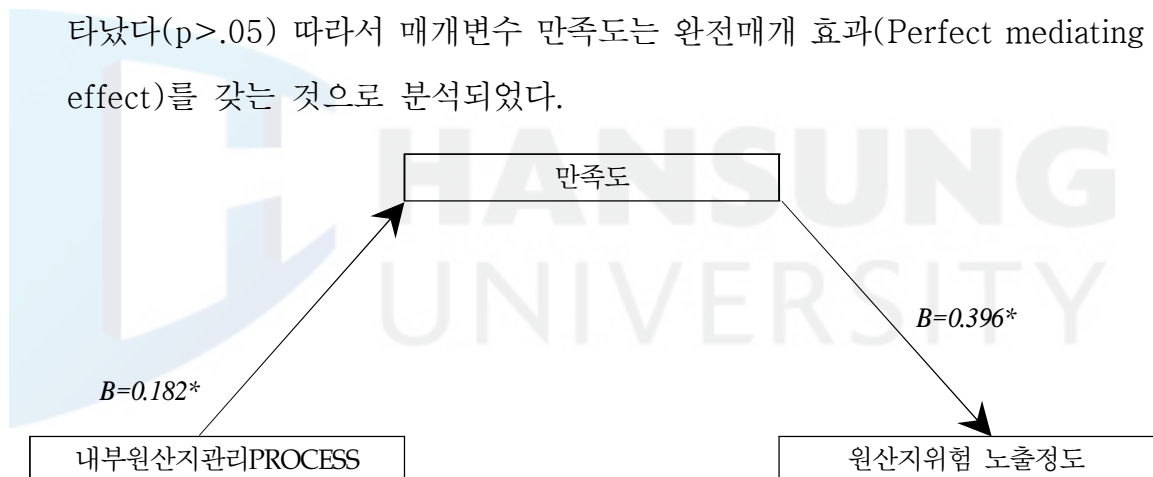
<표6-14> 관세지식서비스가 원산지기준오류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R ²	t	F
독립 -> 종속	관세지식서비스 -> 원산지기준 오류위험	0.216	0.054	2.020*	4.082*
독립 -> 매개	관세지식서비스 -> 만족도	0.180	0.094	2.727**	7.437**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관세지식서비스 -> 원산지기준 오류위험	0.094	0.221	0.910	10.069***
	만족도 -> 원산지기준 오류위험	0.682		3.905***	
종속변수: 원산지기준 오류위험					
* $<.05$, ** $<.01$, *** $<.001$					

4) 내부 원산지관리Process가 원산지위험노출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 매개효과

내부원산지관리가 원산지검증_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6-15>와 같다. 분석결과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내부원산지관리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분석결과 2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내부원산지관리는 매개변인인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450, p<.05$)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 된 3단계 검증에서 매개변인인 만족도는 종속변수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728, p<.05$) 독립변인인 내부원산지관리의 영향은 3단계 검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매개변수 만족도는 완전매개 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6-15>내부원산지관리Process가원산지위험노출에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R ²	t	F
독립 -> 종속	내부원산지관리 ->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0.181	0.031	1.511	2.283
독립 -> 매개	내부원산지관리 -> 만족도	0.182	0.070	2.335*	5.450*
독립 -> 종속	내부원산지관리 ->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0.109	0.095	0.901	3.728*
매개 -> 종속		만족도 -> 원산지위험노출정도		0.396	
종속변수: 원산지위험 노출정도					
* $<.05$,** $<.01$,*** $<.001$					

5) 내부원산지관리 Process가 품목분류노출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매개효과

내부원산지관리가 원재료의 품목분류_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6-16>와 같다. 분석결과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내부원산지관리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분석결과 2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내부원산지관리는 매개변인인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450, p<.05$)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 된 3단계 검증에서 매개변인인 만족도는 종속변수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8.001, p<.01$) 독립변인인 내부원산지관리의 영향은 3단계 검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매개변수 만족도는 완전매개 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6> 내부원산지관리Process가 품목분류오류에 영향을미칠때 만족도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R ²	t	F
독립 → 종속	내부원산지관리 → 품목분류오류위험	-0.060	0.002	-0.413	0.681
독립 → 매개	내부원산지관리 → 만족도	0.182	0.070	2.335*	5.450*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내부원산지관리 → 품목분류오류위험	-0.205	0.159	-1.492	8.001**
	만족도 → 품목분류오류위험	0.798		3.974***	
종속변수: 품목분류 오류위험					
* $<.05$,** $<.01$,*** $<.001$					

6) 내부원산지관리 Process가 원산지기준오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

내부원산지관리가 원산지기준_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6-17>와 같다. 분석결과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내부원산지관리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분석결과 2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내부원산지관리는 매개변인인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450, p<.05$)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 된 3단계 검증에서 매개변인인 만족도는 종속변수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0.473, p<.001$) 독립변인인 내부원산지관리의 영향은 3단계 검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매개변수 만족도는 완전매개 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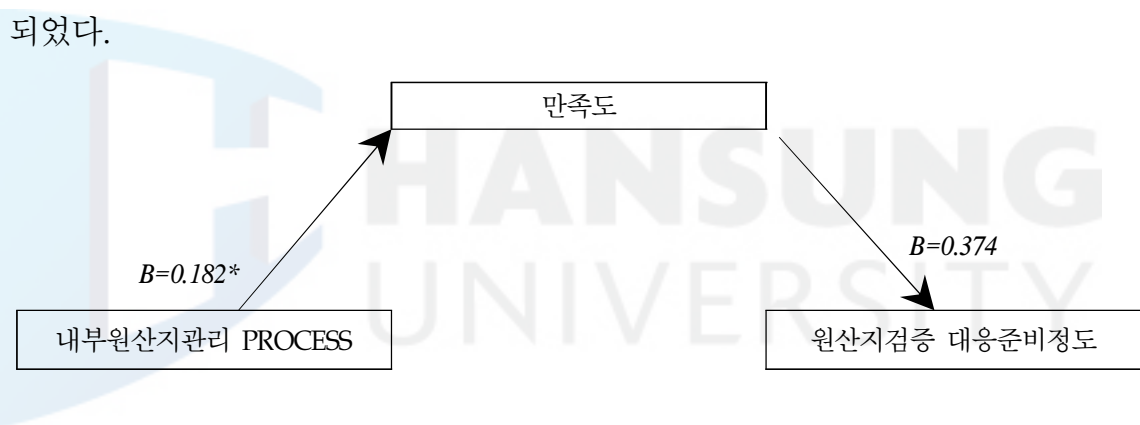


<표6-17>내부원산지관리 Process가 원산지기준위험에 영향을 미칠때 만족도매개효과

단계	변인	B	R ²	t	F
독립 → 종속	내부원산지관리 → 원산지기준 오류위험	0.000	0.000	0.004	0.000
독립 → 매개	내부원산지관리 → 만족도	0.182	0.070	2.335*	5.450*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내부원산지관리 → 원산지기준오류위험	-0.142	0.228	-1.210	10.473***
	만족도 → 원산지기준오류위험	0.786		4.577***	
종속변수: 원산지기준 오류위험					
* $<.05$,** $<.01$,*** $<.001$					

7) 내부원산지관리 Process가 원산지검증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 매개효과

내부원산지관리가 원산지검증 대응준비_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6-18>와 같다. 분석결과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내부원산지관리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246$, $p<.001$) 분석결과 2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 내부원산지관리는 매개변인인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450$, $p<.05$)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된 3단계 검증에서 매개변인인 만족도는 종속변수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0.473$, $p<.001$) 독립변인인 내부원산지관리의 영향은 3단계 검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단계 보다 B 값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매개변수 만족도는 부분매개 효과(Partial mediation effect)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8> 내부원산지관리 Process가 원산지검증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칠 때 만족도매개효과

단계	변인	B	R²	t	F
독립 → 종속	내부원산지관리 → 원산지검증 대응준비정도	0.615	0.296	5.500***	30.246***
독립 → 매개	내부원산지관리 → 만족도	0.182	0.070	2.335*	5.450*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내부원산지관리 → 원산지검증 대응준비정도	0.547	0.343	4.851***	18.567***
	만족도 → 원산지검증 대응준비정도	0.374		2.269**	
종속변수: 원산지검증 대응준비정도					
* $<.05$,** $<.01$,*** $<.001$					

제 10 절 가설검증 결과

1) 관세지식서비스가 원산지관리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의 검증

본 연구가 연구설계의 단계에서 관세지식서비스가 원산지위험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증할 목적으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6-19>와 같다.

<표 6-19> 관세지식서비스가 원산지관리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의 검증결과

가설 H1	관세지식서비스는 무역기업의 원산지관리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무역기업들의 지식수준이 낮을 경우 전문 관세지식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로인해 원산지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H1-1>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산지위험의 노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2>	관세지식서비스는 품목분류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3>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산지기준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4>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5>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6>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7>	관세지식서비스는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8>	관세지식서비스는 원산지로류 피해규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1, H1-2, H1-3의 가설에 대하여는 본장 제9절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며 H1-4 ~H1-7은 본장 제8절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하나 매개효과가 없으므로 기각하였고, H1-8은 본장 제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측정되지 않아 기각하였다.

2) 내부원산지관리 PROCESS가 원산지관리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의 검증

본 연구가 연구 설계의 단계에서 내부 원산지관리 PROCESS가 원산지위험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증할 목적으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6-20>와 같다.

<표 6-20> 내부 원산지관리 Process가 원산지관리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의 검증

가설 H2	기업 내부의 원산지관리process는 무역기업의 원산지관리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 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정한 원산지관리process는 위험요소를 해소시키는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원산지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H2-1>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원산지위험의 노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2>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품목분류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3>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원산지기준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4>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5>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6>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7>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8>	내부원산지관리process는 원산지로류 피해규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1, H2-2, H2-3, H2-6의 가설에 대하여는 본장 제9절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며 H2-4, H2-5의 가설은 본장 제8절 제2)항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하나 매개효과가 없으므로 기각하였고, H2-7의 가설은 매개효과가 없으므로 기각하였고, H1-8은 본장 제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

로 측정되지 않아 기각하였다.

3) 협력업체관리가 원산지관리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의 검증

본 연구가 연구설계의 단계에서 협력업체관리가 원산지위험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증할 목적으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6-21>와 같다.

<표 6-21> 협력업체관리가 원산지관리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의 검증

가설 H3	협력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협력업체 관리는 원산지관리위험을 완화 내지 제거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산지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H3-1>	협력업체관리는 원산지위험의 노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2>	협력업체 관리는 품목분류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3>	협력업체 관리는 원산지기준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4>	협력업체 관리는 원산지증명서 오류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5>	협력업체 관리는 원재료의 가격 및 BOM관리 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6>	협력업체 관리는 원산지검증 대응준비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7>	협력업체 관리는 수출 자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8>	협력업체 관리는 원산지로류 피해규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의 가설 8개는 모두 매개효과 없음으로 분석된바 본 연구 조사대상기업의 85.14%가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그중에서도 종업원 30명 미만의 소기업이 40.54%인 점으로 보아 응답자 대부분이 협력업체를 관리할 위치가 아닌 대기업의 협력업체 위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FTA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최소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이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H3-1, H3-4, H3-6, H3-7은 본장 제8절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하나 매개효과가 없으므로 기각하였고, H3-2, H3-3, H3-5는 매개효과가 없으므로 기각하였고, H3-8은 본장 제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측정되지 않아 기각하였다.



제 7 장 결론

FTA 무역환경에서 교역량의 증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시현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³⁵⁾ 그러나 FTA의 특혜관세가 최종적으로 개별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되는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상존하고 있다.

수입소비재의 특혜관세로 인한 관세절감효과는 소비자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분산되며, 수입 원자재의 관세절감효과는 납품기업의 단가조정으로 분산되는 등 수입부문에서의 특혜관세효과는 궁극적으로 유통과정에서 분산되어 직접 수입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수출의 경우에도 상대국 수입자는 수출자의 특혜관세 절감효과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수출가격에 영향을 주어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수출기업이 수입국에서의 특혜관세효과로 얻는 수출경쟁력 역시 멀지 않은 장래에 균형점을 찾게 될 것이다.

또한 수출입기업에 있어서 FTA무역환경은 특혜관세로 인한 기업이익, 수출경쟁력에 의한 기업이익의 기회 등을 반드시 수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무역환경의 변화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기업이 FTA무역환경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상당한 관리비용을 들여서 복잡하고 엄격한 FTA 원산지관리를 수행해야만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더구나 매출액 중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비중이 낮은 기업이나 다 같은 수준의 FTA관리지식을 습득하여야 하고, 동등한 관리비용을 들여서 원산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기업에 국내 납품만을 하는 영세한 로컬기업들의 경우도 위와 같은 입장이므로 이러한 국내 로컬기업에 대한 배려와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산지검증 주체인 관세행정당국의 검증방향과 수준 조절이 필요하다. 제 5장 제6절에서 분석하였듯이 교역상품의 원산지 진정성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형식상의 경미한 하자를 근거로 고액의 특혜관세를 회수하는 경우는 상호우호적인 FTA 협약의 본질적 방향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

아무튼 세계무역환경은 FTA 체제로 전환되었고 앞으로도 한층 더 심화될 것으

35) 2015년4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 신FTA추진전략 보도자료

로 전망된다. 무역기업은 FTA 무역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여야하는 반면 본 논문의 주제인 FTA 원산지관리상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내부적인 역량을 증대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에 대한 핵심역량 증대방안이다. 무역기업이 FTA효과를 거두고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지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에 대한 핵심역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첫째, FTA원산지규정에 대한 업무지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각종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한다. 설문지의 기술통계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관세지식서비스는 Likert 5점 척도에서 3.69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척도를 나타내었다.

정부에서는 FTA 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출기업들의 FTA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³⁶⁾ FTA 활용 단계에서의 주무부서인 관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FTA 무역관련 지원정책 및 시스템을 숙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관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설명회, 업무자문을 활용하며 YES-FTA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FTA 협정국별로 관련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둘째,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국내 전문 컨설팅회사의 자문을 얻는 것도 FTA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FTA 무역관련 전문지식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업의 경영환경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경우 객관적인 평가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전문기관과 협력관계(partnership)을 유지하고 전문적인 관세지식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에

36) 관세청에서는 이미 FTA- PASS(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출입기업의 원산지관리, 결정, 검증 및 서류보관, 유통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YES-FTA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SMART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SMART 추진전략은 Streamlined system(제도의 선진화), well-Managed verification(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촉진), Assist company's competitiveness(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 Reinforced infra(최고수준의 FTA 활용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Top class man-power(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 FTA 이행체계 구축)의 약칭이다. (한국관세사회 2015)

대한 제도, 법규 및 시스템 등에 대해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관세법인(관세사)의 자문을 수용하는 경우 수출기업입장에서 추가적인 전문인력 확보, 조직구성 및 업무역량의 확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단계부터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무역상대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해당 국가의 FTA 원산지관리 및 검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법규 및 시스템 등은 해당 국가의 전문기관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역상대국이 광범위하고 수출품목이 다양할 경우 더욱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산지위험의 효과적 관리방안이다. 원산지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무역기업의 FTA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구매정보, 회계정보, 생산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이해하고 무역업무까지 가능한 전담자(전담부서)지정이 필수적이다. 전담자지정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과 사내에 FTA 지식이 축적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FTA 업무를 전담하는 사내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원산지관리업무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구매정보, 회계정보, 생산정보의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과 그 절차를 표준화하여 업무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원산지관리 표준 매뉴얼을 갖춰야한다.

셋째, 무역기업의 제조품목수가 다양하고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종류가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원산지관리를 위하여는 전문가와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많은 규격의 생산품과 관련 원부자재의 입출 및 소요량 관리, 원부자재 개개의 원가정보들은 매뉴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효율성과 편리성에서 뒤떨어진다. FTA 협정별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 원가회계기준, 적용공식 및 공제비용 등을 분석하고 각 협정별 특성을 반영시킨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업무처리가 가능하다.³⁷⁾

37) 권승하, 임승태(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원산지의 복잡성과 엄격성이 원산지관리업무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원산지관리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내부에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협력업체와의 체계적인 협조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검증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산지관리업무의 자료를 축적시켜 지속적으로 업무수행과정에 환류(Feed Back)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개별기업의 원산지관리 시스템구축에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관세청의 FTA-PASS 시스템³⁸⁾을 활용할 경우 효과적으로 업무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원산지관리 전문가와 매뉴얼,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무역기업 자가 검증(self-audit)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개별회사의 원산지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 관련서류의 작성, 보관 및 원산지결정결과의 자체적인 검증실행은 원산지 위험관리에 매우 유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재 대부분의 무역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FTA 원산지관리위험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FTA협정별 규정내용을 완전히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무역기업들이 FTA 무역 초기단계에서 전문 관세지식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고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미 FTA 원산지업무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상존한다. 향후 이와 같은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8) 관세청이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원산지관리용 전산시스템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관련 규정집』, 2007.
- 관세청,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 2014.
- 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9.
- 권승하, 임승대, 「원산지관리요인 간의 관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사)한국 국제 상학회, 제1호, 2015.
- 권영민, 「WTO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형평성」 -강대국의 성과에 대한 비교 검증-, 『국제통상연구』, (사)한국국제통상학회, 제20권 제1호, 2015. 3월.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원산지 인증 실무』, 2011.
- 김명철, 방영호 역, 『카오틱스』, 비즈니스맵, 2009. Philip Kopler & John A. Caslione, 『Chaotics』, AMACOM, 2009.
- 김윤식, 「FTA 원산지검증 현황 및 대응전략」 세미나 자료, 『FTA 통상환경하에서 우리기업 의 대응전략』, 대한상공회의소, 2014년 11월
- 이형대, 「한미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방안연구」 2015
- 김재식, 「기업입장에서 본 통관관련 리스크의 완화방안」, 『한국관세학회지』, 제 4권 제2호, 한국관세사회, 2003.
- 김태인, 「수출기업의 관세업무리스크 사례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사회, 2009.
- 나도성, 육현영, 「중소기업 컨설팅의 핵심요소가 컨설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 성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박범조, 『응용 계량경제학』, 시스마프레스, 2013.
- 박태성 외 6인,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2013.
- 송건섭, 이환범 「서브컬 요인을 이용한 지역축제의 서비스평가」, 2002, 한국행정정보 제36권 제3호, pp251를 최영미(2013) ‘관세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방안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재인용

송건섭, 이곤주, 윤종갑 (2005), '공공서비스성가평가와 측정' pp.71을 최영미 (2013) '관세행정서비스만족도 향상방안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재인용

이내형, 오경환,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사)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9.

이명구, 「FTA 지원행정 운영방향」, 『계간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15. 봄호.

이종원, 최현집, 『SAS를 이용한 통계분석』, 박영사, 1995.

이호철, 윤남현 공저, 『FTA 알고 가자』, SEE's COM, 2013

이호철, 윤남현 공저, 『FTA 핵심정리』 -The Core on FTA Biz-, 다예, 2011

정성훈, 김태인, 「관세업무리스크의 관리와 측정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연구』, 제 3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07.

정인교 외 3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정재완,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정창근, 김태인, 「한국 수출입기업의 관세업무리스크 관리와 기업성과 관계의 실증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8권 제3호, 2010.

채형복, 『국제원산지제도』, 높이깊이, 2011.

최준호, 「한,미 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전략」, 『계간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14. 가을호.

최현정 '대구국제공항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방안', 2005, pp.23을 최영미 (2013) '관세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방안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재인용

2. 국외문헌

- A. Estevadeodal & K. Suominen, "Rules of Origin i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Is All Well with the Spaghetti Bowl in the Americas?", *Economia*, Spring, 2005.
- Busch M. L. & E. Reinhardt, "Developing Countries and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 37, No.4, 719-735, 2003.
- E. Ivan Kingston, "The Economics of Rules of Origin",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University of Michigan, 1994.
- Edwin Vermulst, Paul Waer and Jacques Bourgeois, Rules of Origins in International Trade : A Comparative Stud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 European Commission, DG Trade, EU-Korea FTA:A Quick Reading Guide, 2009.
- James, Barrie, "Reducing the risk of Globalization", *Long Range Planning*, Vol.23, No1, 80-91, 1990.
- Jeffrey J. Schott, "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 Summary Assessment", *Policy Briefs*, Number PB 07-7 (Peterson Institute), 2007.
- O. Cadot, A. Estevadeodal and A. Suwa-Eisenmann, " Rules of Origin as Export Subsidies", *CEPR Discussion Paper 4999*, 2005.
- Raymond Thibeault, Origin Verification Technique on Regional Value Contents: Net Cost & Transaction Value, KIOI, 2010.
- Richard L. Constants, Richard B. Corbett, Cassidy, Steven M, The Market Value of Corporate Risk Management Function,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7(4), 1990.

http://www.wto.org/englis/tratop_e/dispute.htm

<http://www.customs.go.kr/kcshome/>

부 록

설 문 지

I. 기업이 FTA원산지 위험을 완화(제거)하기 위하여 관세지식서비스를 활용하는 경로와 FTA원산지에 중요한 관세지식 분야별 중요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판단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V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 귀하(사)는 FTA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관세지식서비스를 어떤 경로를 통하여 활용하십니까?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관세청, 세관 등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관세지식 서비스를 활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무역협회, 코트라 등 공법인이 제공하는 관세지식 서비스를 활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관세법인(관세사)이 제공하는 관세지식서비스를 활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포탈을 검색하여 취득한 관세지식서비스를 활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지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관세지식서비스를 활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 문1>의 효과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매우 불만 이다	불만 이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관세청, 세관 등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관세지식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2 무역협회, 코트라 등 공법인이 제공하는 관세지식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3 관세법인(관세사)이 제공하는 관세지식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포탈을 검색하여 취득한 관세지식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5 지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관세지식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문3>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세분된 관세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품목분류(HS)에 관한 지식은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원산지기준(PSR)에 관한 지식은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약에 적합한 원자재관리(BOM)는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지식은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원산지검증내용에 관한 지식은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떤 관세지식도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4> 문 3의 보충질문입니다

설 문 문 항	품목분류 (HS)지식	원산지 기준(PSR) 지식	원재료(B OM)관리 지식	원산지증 명서 작성지식	검증대응 지식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관세지식중 어느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란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FTA무역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원산지관리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사)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5> 원산지위험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업내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업내에 원산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은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업의 원산지관리에 외부전문가가 제공하는 관세지식정보는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업의 원산지관리체계가 효율적이면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업의 원산지관리체계가 편리하면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기업이 자체적인 원산지검증(SELF-AUDIT)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면 FTA 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기업의 자체적인 원산지검증(SELF-AUDIT)이 객관적이고 준법적이면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기업의 원산지관리 기준과 절차이행은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 6> 문 5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설문 문항	매우 불만 이다	불만 이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기업내에 원산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2 기업의 원산지관리에 외부 전문가가 관세 지식을 제공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3 기업내 원산지관리체계의 효율성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4 기업내 원산지관리체계의 편리성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5 기업이 자가 원산지검증(SELF -AUDIT)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6 기업이 자가 원산지검증(SELF -AUDIT)을 객관적이고 준법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문 7 > 원산지관리를 위한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귀사)가 납품을 받는 입장일 수도 또는 납품을 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란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FTA원산지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협력업체와 원산지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FTA관련 교육을 하는 것은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협력업체의 원산지자료를 검증하면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협력업체의 관리는 FTA원산지 위험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 8 > 원산지관리 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설문 문항	없다	1인	2인	3인	5인이 상
1 원산지관리 전문부서(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규모는 어느 정도 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9 > 문 7, 8의 만족도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설문 문항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이 있는 경우 그 만족도는?	①	②	③	④	⑤
2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경우 만족도는?	①	②	③	④	⑤
3 협력업체와 원산지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그 만족도는?	①	②	③	④	⑤
4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FTA관련 교육을 하는 경우 그 만족도는?	①	②	③	④	⑤
5 협력업체의 원산지자료를 검증하는 경우 그 만족도는?	①	②	③	④	⑤
6 FTA원산지관리 전문부서(1인 또는 팀)를 운영하는 경우 만족도는?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FTA원산지 위험노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사)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0> 원산지검증 관련한 위험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V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이다	많다	매우 많다
1 최근 5년간 FTA원산지 위반으로 관세를 추정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최근 5년간 FTA원산지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최근 5년간 FTA원산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최근 5년간 FTA원산지 위반으로 협정세를 배제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최근 5년간 원산지 조사(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최근 5년간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최근 5년간 FTA문제와 관련하여 거래선이 이탈되었거나 그러한 위험을 예감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5년간 해외 무역파트너(협력업체)와 FTA문제와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최근 5년간 확신 없이 원산지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5년간 회사내 자체적인 원산지검증 (SELF AUDIT)을 해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 수출입 물품과 원재료의 품목분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최근 5년간 수출한 제품의 품목분류(HS CODE)는 확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최근 5년간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HS CODE)는 확정적이라고 단정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최근 5년간 수입(국내구매 포함)한 물품의 품목분류(HS CODE)는 확정적이라고 단정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기준(PSR)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최근 5년간 수출품(납품물품)에 적용한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은 매우 정확하게 적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최근 5년간 수입한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PSR)은 수출자가 매우 정확하게 적용하여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문 항	전혀 없다	많지 않다	보통 이다	많다	매우 많다
3 최근 5년간 수출품(납품물품)에 적용한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수정한 사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최근 5년간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이 한국세관의 해석과 달라서(HS등으로) 문제가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이다	많다	매우 많다
1 최근5년간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최근 5년간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를 수정한 사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최근 5년간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작성에 오류가 발생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최근 5년간 발급된 포괄원산지증명서(확인서)의 포괄기간 내에 BOM, 원재료가격, 원재료공급선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서(확인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14> 수출제품과 원재료의 가격 및 BOM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이다	많다	매우 많다
1 최근 5년간 원재료공급자의 변화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최근 5년간 수출품의 BOM에 변화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최근 5년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최근 5년간 수출품 판매가격에 변화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최근 5년간 협력업체가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에 오류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 15> 원산지검증의 대응준비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활용하여 얻는 이익만큼 같은 규모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출(납품)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한국관세청 또는 상대국 관세행정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진위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상대국 수입자가 관세를 추징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관계당국으로부터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당사가 수출하는 물품의 FTA혜택이 해당국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5년이내에는 언제든지 한국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와 수입자인 당사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당사가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관계당국으로부터 수입품의 원산지증명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당사가 해당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FTA혜택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FTA활용에 있어서 수출입자간에 주고 받는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의 원산지 진위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요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FTA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수출입물품의 국제운송시 경유지를 거치지 않는 직접운송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FTA를 활용한 원산지증빙서류(수출필증, 수입필증,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원가자료및BOM등)는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FTA를 활용한 원산지관련서류는 모두 보관되어있고 언제라도 관계기관에 제출 가능한 상태다	①	②	③	④	⑤
10 원산지증빙서류는 수출필증 또는 수입필증을 기준으로 관련자료(선적서류 등)를 일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상대국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이다	많다	매우 많다
1 최근 5년간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진하여 수정통보한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최근 5년간 수입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당사가 수출자에게 수정요구하여 수정통보 받은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최근 5년간 FTA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을 계약 할 때 계약서상에 상대국 수출자의 원산지관련 책임소재를 명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최근 5년간 FTA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실성을 어떤 방법으로든 검증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최근 5년간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7> 원산지오류로 발생된 손해규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 없다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 원이하	10억 원이상
1 FTA원산지업무 오류로 인하여 손해,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벌금납부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FTA원산지업무와의 관련성에대한 질문입니다.

직접수출기업은 물론 수출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로컬거래기업도 FTA원산지업무와 관련이 됩니다. 귀하(사)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8> 귀하(귀사)의 FTA원산지업무와의 관련성에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관 련없다	20% 이하	50% 이하	80% 이하	100%
1 귀사의 수출업무를 100으로 가정 할 경우 FTA원산지과 관련된 업무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미래가능성이 아닌 현재의 실무와의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답변)	①	②	③	④	⑤
2 귀사의 FTA원산지업무를 100으로 가정 할 경우 협력업체의 원산지업무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사의 수입업무를 100으로 가정 할 경우 FTA원산지과 관련된 업무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미래가능성이 아닌 현재의 실무와의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답변)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통계처리과정에서 필요한 귀하(사)의 기초적인 자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V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 귀사의 종업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상시 근무자 300명 이상 ()
- ② 상시 근무자 200명 ~ 300명 미만 ()
- ③ 상시 근무자 100명 ~ 200명 미만 ()
- ④ 상시 근무자 30명 ~ 100명 미만 ()
- ⑤ 상시 근무자 30명 미만 ()

문 2> 귀사의 최근 연도의 매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0억원 이상 ()
- ②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 ③ 300억원 ~ 500억원 미만 ()
- ④ 100억원 ~ 300억원 미만 ()
- ⑤ 100억원 미만 ()

문 3> 귀사의 연간 총매출액 중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 ()
- ② 70% 이상 ~ 100% ()
- ③ 40% 이상 ~ 70% 미만 ()
- ④ 20% 이상 ~ 40% 미만 ()
- ⑤ 20% 미만 ()

문 4> 귀사는 다음 중 어떤 형태의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모두 체크해주세요)

- ① 원재료나 시설재를 직접 수입, 제품을 직접 수출 ()
- ② 원재료나 시설재를 국내 구매, 제품을 직접 수출 ()
- ③ 원재료나 시설재를 직접 수입, 제품을 Local로수출 ()
- ④ 원재료나 시설재를 국내 구매, 제품을 Local로 수출 ()
- ⑤ 원재료나 시설재를 직접 수입, 제품을 국내 판매 ()

문 5> 귀사가 수출입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0년 이상 ()
- ② 10년 이상 20년 미만 ()
-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
- ④ 2년 이상 ~ 5년 미만 ()
- ⑤ 2년 미만 ()

- 끝 -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Customs Knowledge Service to the Customs Business Risk in Corporate: Focused on the Risk of Origin Management in FTA

Lee, Ho-cheol

Major in Convergence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In the course of actively coping with the changes of world trade environment, Korea has already made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49 countries and 12 of them has taken effect in the past decade. Korea has benefited from the effects of FTA Trade with the growth of overseas trade volume and the surplus of current account. Korea also continues to progress the negotiations on new projects such as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hrough the recent efforts on cooperation among multilateral countries.

Most FTA aim to promote the execution of agreement and establish the rules of fair trade among partner countrie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of FTA, each partner country permit the favored duty rate or duty free to the counter partner, in which cases, the agreement requires complex and strict rules of origin management and verification for trade commodities and services.

To enjoy the favor of duty, trade companies have to manage and fulfill the rules of origin correctly. But they make mistakes in managing and fulfilling the rules of origin due to insufficient knowledge, which exposes the safety of business and FTA trade to risk. Moreover, there is another potential risk involving the post inspection of customs authority with regards to the compliance of the related regulations. Based on these cases, I believe that the effects of FTA will diminish and negatively influence many trade companies and partner countries.

This study analyses the management and verification of the trade companies from the FTA origin management perspective, and focuses on the mistakes of many trade companies in fulfilling the rules of orig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trategies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verification of the FTA origin basis.

First, I estimate the effects of special customs knowledge services by special customs officers or corporations. Previous studies have already verifie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special customs knowledge services. Second, the criteria of FTA origin are very complex and strict. Therefore, trade companies have to thoroughly know about the creation of FTA origin and have to construct the master plan to successfully conduct business and FTA trade. Third, a model composed of 17 seemingly important variables is specified and estimated. The result of this estimation then is analyzed thoroughly using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and 7 variables thought to be most appropriate are chosen to build the final model. Fourth, in the conclusion, I deduce the most efficient strategies of management and verification for the FTA origin.

Even th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reasonably satisfactory, further efforts to improve these strategies seem necessary. Most of all, the strategies need to reflect the possibl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Korean economy and FTA trade environment.

【Key word】 FTA, Certificate of Origin(C/O), Criterion of FTA Origin, Management of Origin, Verification of Origin, Classification of HS code, PSR, Rules of Origin. BOM, RVC, MC, CTH, CTSH, Risk, Risk Management,

